

한국이민학

2019년 제7권 제1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의 기관지로서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한다. 논문기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한국이민학회의 회원으로 제한한다. 단, 비회원이 투고를 원할 때는 회원가입을 전제로 한다.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한국이민학》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 주소로 연락하면 된다.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630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내 한국이민학회 사무국

전화: (063) 270-3586 팩스: (063) 270-2921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imanet.org>

회원연회비

일반회원: 5만원

대학원생: 3만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221-253841-04-011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영훈(편집위원장, 강원대학교)

위원 김철호(부편집위원장, 전북대학교) 박천웅(전북대학교)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영완(한국외국어대학교)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박효민(건국대학교)

문경희(창원대학교) 윤인진(고려대학교)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

Erin Aeran Chung (Johns Hopkins University)

Gil-Soo Han (Monash University)

Jaeeun Kim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Nora Hui-Jung Kim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Timothy C. Li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편집조교 엄승범(전북대학교)

한국이민학

2019년 제7권 제1호

연구논문

도시재구조화에 따른 외국인 주거이동과 주거지 개편 백일순	5
대도시의 외로운 이방인들: 국내 이주 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윤지원	35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and Two Patterns of 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Byoungha Lee	57

부록

한국이민학회 정관	85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93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95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99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101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107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113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Vol.7 No.1 2019

Contents

ARTICLES

- The movement and change of immigrants' residential area according to urban restructuring | Yilsoon Paek
 - Lonely Strangers of Metropolis: The Effect of Internal Migration Experience 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 Jiwon Yun
 -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and Two Patterns of 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 Byoungha Lee
-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연구논문

도시재구조화에 따른 외국인 주거이동과 주거지 개편*

백 일 순 **

주택 재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모 주택 개발은 대대적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지는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주거 지역과 분리되어 작동하는 외국인 주거지는 도시 재정비 사업과 같은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특정 지역으로 더욱 밀집되거나 유사하는 임대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또한 노후 주택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저소득 외국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주거 지역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주거지는 그 지역과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도시 개발 정책과 같은 공간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거나 구조가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주제어: 외국인 주거지, 도시 재구조화,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과정, 주거 이동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한 것이며, 2018 한국이민학회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외국인 인구 이동의 변화로 살펴본 외국인 주거지의 재편’으로 일부 내용이 발표되었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thinki01@snu.ac.kr. 주저자. 교신저자.

I. 서론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회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기보다는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빼앗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치안에 위협적인 존재로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배경으로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의 가결, 시리아 난민 사태와 유럽 국가들의 대대적인 반발,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의 상황은 어떨까? 2018년 여성 가족부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보여주듯이, 외국인의 유입이 장기화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기여보다 손실이 더 크다’,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범죄율이 상승했다’,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 시킨다’ 등의 항목에서, 조사가 실시된 첫 해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¹⁾. 2014년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²⁾와 같은 국가 단위의 비교에서도 한국인은 ‘다른 인종과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와 ‘외국인 이민자와 이웃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독일 21.5%, 미국 13.7%, 호주 10.6%, 스웨덴 3.5%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영세 기업 중심의 ‘3D 업종’의 인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양적인 측면만을 부풀렸을 뿐, 외국인의 증가가 내국인과의 갈등과 더불어 치안, 복지 등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결국 사회 통합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태도는 외국인 이주자들을 단순히 노동

1) 여성가족부의 보고서(2018)에 따르면,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인식수준의 수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실제 이주민들과의 직접 교류를 하는 등 실질적 통합측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2)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는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문화의 사회, 문화, 종교, 정치 등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1년부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개발하여 국가별 가치관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5년 간격으로 6개 Wave의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Wave1:1981~1984, Wave2:1990~1994, Wave3:1995~1998, Wave4:1999~2004, Wave5:2005~2009, Wave6:2010~2014). 각 Wave마다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국가가 다른데, Wave1에서 10개국, Wave2에서 18개국, Wave3에서 56개국, Wave4에서 41개국, Wave5에서 58개국, Wave6에서 59개국이 그 대 상이 되었다. 설문 문항은 삶에 대한 인식(Perception of life), 환경(Environment), 일(Work), 가족(Family), 정치 사회 (Politics and Society), 종교 윤리(Religion and Morale),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안전(Security), 과학(Science)으로 분류되어 각 Wave마다 조금씩 수정, 보완된다. 2014년 보고서로 작성된 Wave6의 경우 상세 설문 문항 포함 총 설문 항목은 응답자의 인적정보를 제외하고 228개다.

시장의 유지를 위한 ‘대체인력’의 관점으로만 보아 그들의 수를 줄이고, 늘리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공중에서 부유하는’,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존재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구를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주거 복지 체계가 불완전한 한국 사회에서 ‘주거’는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외국인 이주자는 주택 시장에서 주거 정보를 얻고, 주거의 질을 선택하는 과정 등에서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는 가격과 주택재고의 규모와 이질성 등과 같은 주택 구조 및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의 장, 단기적으로 체류하여 도시 공간을 변화시키는 특정 집단의 연속적인 점유, 시장 자체 내의 진입장벽의 존재나 불균형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 공간의 노후화로 인한 다양한 도시 개발 논리들 속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밀집지가 다루어지는 방식과 그들의 적응 전략을 확인함으로써, 도시와 외국인 이주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Portes, 2000). 그러나 실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이주자들의 존재는 부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족할만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일부에 불과하다.

특히 대규모의 재정비, 재개발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이주자가 체감하는 주거 불안정성은 내국인보다 더 크게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처하게 되는 위기와 적응 양상을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주거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재구조화에 따라 외국인의 주거 이동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시 통계자료 및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주거지 재편의 원인을 밝히고자 외국인 거주자 및 부동산 종사자 등의 관계자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II. 도시 재구조화와 이주자

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는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외국인 밀집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목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Henry et al. 2002; MacLeod and Goodwin 1999). 예를 들어, 워크스(Walks, 2001)는 1971년과 1991년 사이의 센서스 자료를 통해 캐나다 토론토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도시 공간과 어떻게 접합되

는지를 추적하면서 양극화의 심화가 가장 먼저 소득 수준이 낮은 이주자에게 타격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도시 재구조화의 주요 대상지인 도심의 낙후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자일수록 주거 불안정성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도시 공간의 재편 과정 속에서 이주자는 언제나 약자로 취급되어 왔다(Menahem, 1996).

이러한 도시 재구조화를 이끌어가는 담론으로서 ‘신자유주의’는 인종, 민족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회경제적 과정으로, 외국인의 인종, 민족 등에 대해 사회에서 경험, 이해되는 방식이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변형되며, 궁극적으로 사회-공간적 소외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로버트와 마타니(Roberts and Mahtani, 2010)는 ‘인종화된 신자유주의(Race neoliber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종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불가분한 관계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인종화된 신자유주의가 인종을 계급화하고, 도시 공간에 그대로 투영되어 공간 격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 개발 과정에서 배제, 축출에 노출되도록 방관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Cities and Race: America's New Black Ghettos」이라는 저작에서 윌슨(Wilson, 2006)은 미국의 러스트 벨트(Rust belt) 내에 게토의 안착과 확장에 대해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인종과 신자유주의와의 관계로 분석한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게토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여 흑인 게토 지역이 원활한 주택 시장의 작동에 반(반)하는 것으로 서사를 구성하고, 무엇보다 인종화된 주체들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효과를 정당화시키는데 동원하였던 점에 주목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흑인 게토가 광범위하게 인종화된 시스템 내부와 연결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윌슨의 연구는 신자유주의 도시가 외국인 이주자들의 공간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주거지나 점유공간을 은폐하려는 과정이 세계 도시 어느 곳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국가들은 사회적 응집력을 장려함으로써 이주자들을 분열, 사회 서비스의 감소, 공동체의 퇴보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간주한다. 반(反)이주자 담론은 국민 국가 형성 과정에 있어 필연적 측면(Higham, 2002)으로, 낙인찍은 타자들을 배제하고 국가의 충성을 보이는 이들을 시민으로 인정해 온 역사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재구조화 과정은 이방인들에 대한 불안을 조장하여 혐오 대상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반(反)이주자 담론은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용이해진 부와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와 국가의 역할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저이윤의 상황에도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새로운 원천으로 활용된다(Schiller et al., 2010).

인종화된 신자유주의는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구조화의 형태로써,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또는 도시 수축(Urban shrinkage 혹은 shrinking city)이라는 방식으로 이주자의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의에 있어, 크라세(Krase, 2005)는 지역 주민과 로컬 경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들의 행위까지 변화시키는 상징적인 현상이라 표현하였다. ‘중산층 유입’이라는 관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주택 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의 경제적 관점이나 국가 및 기업 행위자들의 관리적 관점에서 투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 구성을 선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웃을 선별하는 사회적 과정은 정치적, 경제적 힘들과 상호작용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의 재투자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정체성과 명성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주택 소유주,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자, 정책자 등에 의해 유도되는 신규 건설, 재건축 사업은 일련의 지역적 배경을 형성하는 모든 사회-공간적 변화를 야기한다.

나이든(Nyden et al., 2006)은 젠트리피케이션 효과가 공동체의 소멸과 동시에 인종,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시키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도시 공간의 변화가 이웃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이주자 경제, 종교적 관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가 사례로 든 시카고지역은 인종적 분리가 극심한 도시이며 그곳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 자체가 인종 차별적 과정이었다고 지적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흑인과 백인 사이의 버퍼 역할을 했던 라틴계 이주자들이 흑인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인데, 연구자는 지역 이웃 구성에 방해가 되는 집단들을 제거하려는 백인 젠트리파이어들의 의도가 라틴계 이주자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도시의 인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의 감소에 따른 도시의 확장 혹은 성장 추세가 쥘리아는 '도시 수축'³⁾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시 변화에 이주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swalt 2007). 폴(Fol, 2012)은 프랑스를 사례로 도시 수축의 사회 공간적 효과를 분석하여 재생 전략의 사회적인 측면에 담긴 사회-공간적 분열(fragmentation)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가 밝힌 도시 수축(Urban shrinkage)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투자 감소는 고용 기회의 축소, 실업률 증가를 동반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쇠퇴는 선별적인 이주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능력 있고 젊은 인구의 이동을 가장 먼저 자극한다. 그 결과 실업의 사

3) 도시 수축이라는 용어는 과거 도시 쇠퇴(Urban decline)와는 다른 의미로 인구 감소, 산업 구조의 변동과 더불어 도시의 빈 건물들을 정리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로 도시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downsizing) 새로운 도시 공간의 전략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Baron et al., 2010).

회적인 효과와 생활수준의 악화로 인해 가장 취약한 인구(저소득층, 노약자, 저학력자 등)에게 영향을 끼치며, 해당 지역에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

축소된 도시에서 이주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쉽게 노출된다. 그러나 도시 정부는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은 공간적 분리나 축출(eviction)을 경험하게 된다. 도시 수축은 도시 상층 계층의 특권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된다. 도심 재개발 등과 같은 도시 재구조화 과정에서 자본가들은 도시 수축이라는 명목으로 물질적인 토대뿐만 아니라 권위를 대중으로부터 강탈함으로써, 새로운 부를 축적할 기회를 독점한다.

따라서 도시 수축을 경험하게 되는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에는 산업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계급 권력의 진화가 녹아 있다(Smith et al., 2001). 이로 인해 기존 거주민들의 일상 공간은 축소되고, 건조 환경에 대한 자본의 투기 과정을 통해 '공공의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도시 수축이 진행된다. 이 때 이주자들은 도시 수축이라는 (부)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그들의 주거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 거주 불안정 이외에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불안정성에 다시 한 번 노출된다.

도시 공간의 재편으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공간적으로 표면화되면서 Divided cities (Fainstein et al., 1992), Dual cities (Mollenkopf and Castells, 1991), Partitioned cities (Marcuse and van Kempen, 2002) 등과 같은 '분화된, 이중적 도시' 개념들이 나타났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 개발의 방향이 더불어 불평등한 공간 생산, 투기적 도시화의 발현 등으로 표출되어 도시 공간의 양극화가 일상 생활에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시민들은 자신들의 주거를 비롯한 도시의 주거 약자들을 주변화 시킨 '투기적 도시화'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불평등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신현방, 2016).

본 연구는 도시 재구조화의 과정에서 이주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공간적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국내에서 다루어졌던 주거 정비 사업(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첫째, 사업 조합원 간의 갈등, 재정착 등과 관련한 거주민 의식조사와 주거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다(강우원, 2007; 이인석, 2015). 세입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비 사업 대상 지역은 대체적으로 주택 노후가 진행된 곳으로 저소득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자의 상당부분이 재개발사업을 잘 모르고 있었다. 상당부분 세입자가 주거 이전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주장들이 기존 연구들의 제언으로 수렴되었다(김철홍, 박재홍, 2009; 심희선, 2011).

예를 들어, 재정착 대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공급과 같은 주거 공간 확보뿐 아니라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 공동체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강우원, 2011).

둘째, 재정비 사업의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김중보, 2007; 강동욱, 2008; 강현호, 2008; 최승필, 2012; 이동수, 2014). 대표적으로 이동수(2014)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도시정비 관련법들은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법제정 목적보다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과도한 특례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도시계획법들과의 체계정당성을 가지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결과로 도시 정비 사업들 간의 중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과의 부조화를 초래함으로써 도시계획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대다수의 연구에서 도시정비 관련법들의 체계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이 유일하게 인정되는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가진 문제점을 수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셋째, 사업 자체의 효율성이나 개발이익에 대한 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모색에 대한 것이다(전상역, 2007; 조문현, 2007; 김경수, 2008; 안균오, 2011). 기존의 도시 정비사업과 비교했을 때, ‘광역적 도시정비’, ‘개발이익 조건의 강화’, ‘공공지원의 강화’ 등으로 차별화하고자 했지만 재정비 사업은 종전의 ‘주택재개발’과 별반 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적 불완전성, 계획과 집행 사이의 괴리, 이에 따르는 주거 불안정성의 증가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조명래, 2010). 강우원(2011)의 연구를 다시 언급하자면, 정비 사업 지역의 불평등 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재정력지수와 만 명당 문화 시설 수 이외에는 나아지지 않았으며 노후주택비율은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제도 개선 미비로 인해 원주민 재정착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비 사업의 대상지 대부분이 가치 하락을 경험한 노후화된 주거지로서 외국인

유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논의를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단기 임차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지의 조합원이 된다는 직접적인 관련자로서의 역할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만 몇몇의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의 범주에 들어가는 외국인 세입자에 한해서 제한적인 분석이 있었다. 내국인과 비슷하게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며,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보에 소외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언어적인 문제, 보상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은 저소득층 내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주거 이전비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 할 가능성이 높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재개발된 임대 주택에 거주하기도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조윤희, 2009; 김선명, 2012).

본 연구는 도시 재구조화의 일환으로서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과 시행에 있어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지역으로 용산구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를 선택하였다. 해당 대상지는 서울시에서도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재정비 사업의 시행과 지연이 외국인 주거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 곳이다. 용산구 지역의 외국인 인구 이동과 주거지 선택 양상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재정비 촉진지구의 시행과 같은 도시 재구조화의 과정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구, 주택 등의 통계 자료와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및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한남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의 흐름과 그 영향을 파악하였다.

III. 주택 공급 지연과 새로운 외국인 주거 지역의 형성

1. 용산구 한남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 개괄

서울시는 2004년에 발표한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산구를 도심, 영동, 여의도의 3핵을 연결하는 중심축상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도심기능과 연계하여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서울 도심부 특유의 자연 환경, 역사적인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도심부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심과 용산 부도심의 연계 및 기능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는 2006년 7월 2차 재정비 지구로 선정되어 용산구 보광·한

남·이태원동 일원에 33만평 규모로 재정비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초기 계획안에 따르면, 이태원로와 보광동길 인근의 상가는 지역 상권으로 조성되고 보광로길 주변에 근린공원 2곳이 신설돼 남산~미군기지~한강의 녹지축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무엇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강남이 접해 있어 ‘강남에 가까운 강북’에 힘입어 ‘한강 전망’을 배경으로 하는 낡은 집들이 향후 2만여 가구의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부족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남 재정비 사업은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이견으로 사업 속도를 내지 못 하였던 것이 걸림돌이 되어 기본사업계획안도 마련하지 못 하고 지지부진한 출발로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도시경관계획에 따라 남산을 가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준 용적률 170%를 제시했지만 용산구와 주민들은 사업성을 기준으로 230%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또한 다른 재정비 사업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주권이 하나만 나오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거나 한 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눠 다수가 소유하는 방식의 일명 ‘지분 쪼개기’가 많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사업 지구 선정 2년 만에 6000명 선이던 조합원은 1.5배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정 의무비율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거의 1대1 재개발 수준이 되어 일반 분양 가구가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표 1> 용산구 개발 관련 사업

(단위: 만㎡)

대상사업	면적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로 업무지구, 용산링크 등	330만
이태원로지구단위계획구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등	110만
한강르네상스사업(이촌)지구	85만
용산공원 주변지역 등	245만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 미군부대 이전부지)	(330만)
합계	770만(1,100만)

자료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2008년에 일부 계획을 수정하여 4개의 큰 구역으로 나누어, 2개 구역씩 묶어 각각 2014년, 2017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용적률은 219%로 1단계는 한남동·동빙고동·주성동·보광동(3·4구역)이 2009~2014년, 2단계는 이태원동·보광동 일부(1·2구역)가 2012~2017년에 개발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이 후 오랜 진통 끝에, 2009년 지구 지정 5년 만에 ‘한남뉴타운’ 재개발 계획안⁴⁾이 최종 확정됐다. 재개발 계획안 확정 이후,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구청 등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재정비 지구 중 처음으로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용산구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용역업체 선정, 추진위 임원 선출 등 재정비 사업의 과정을 관리·감독하게 되는 방식⁵⁾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교체에 따라,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70여 곳은 연내 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한남1재정비촉진구역에 해당하는 이태원1동 일대는 540여 명의 소유주가 몰린 곳으로 사업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한남1구역 중에서도 주택 노후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애초 2001년 재개발을 추진할 당시에도 토지 등 소유자의 78%가 찬성했던 곳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민 751명 중 20%가 넘는 151명이 개발에 반대하여 추진위원회도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2016년에 해제 결정이 났다.

그나마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대상 지역⁷⁾ 중 3구역은 2017년부터 가장 먼저 사업을 재개하였고,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하여 2019년 5월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공사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3구역은 당초에 계획한 개발 내용을 일부 수정함으로써, 다른 구역보다 앞서 재개발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4) 변경된 계획안에 따르면 한남 1, 2구역은 미군부대 이전 이후 조성될 용산공원과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두 공원을 연결하는 38m 폭의 '그린웨이'(가로수가 울창하게 조성된 보차혼용가로)가 조성 예정이었다. 글로벌 파빌리온 파크 주변 한남3,4구역은 '그린힐지역'과 '그라운드2.0지역'으로 나뉘어 '공원 속 주거지'로 개발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한강변으로 조망이 가장 뛰어난 한남5구역에는 50층 규모의 초고층 랜드마크 주상복합이 건립하겠다는 안을 선택하였다.

5) 그러나 이 제도가 재정비 사업의 진행 속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것은 용산구청이 재개발지역인 한남 제5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원장을 2010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남5구역 추진위가 재개발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그 다음해인 2011년에도 정비업체 선정 총회를 열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추진위가 이에 따르지 않자 검찰에 다시 고발하였다. 이러한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업 계획안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조합원들의 결정이 쉽게 통과되지 못 하는 구조가 반복되자 사업 추진은 점점 늦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6) 한남뉴타운 1구역만 빼고 가나?, 매일경제, 2012년 02월 06일 기사

7) 2019년 현재, 직권해제된 1구역을 제외하고 2,4,5구역은 정비계획안 변경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그림 1]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좌)와 한남3구역



자료: 뉴스핌

예를 들어,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남산조망점을 기준으로 하여 29층에서 22층으로 낮췄으며, 이슬람사원에서 한광교회로 이어지는 우사단로의 경우, 주민생활시설과 소규모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기존 도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 도로로 만들기 계획하였다.

이처럼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당초 계획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반복되었다. 결국 주민들과 서울시, 용산구가 적정한 수준에서 변경안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이지만, 그 사이 이 지역에 거주했던 외국인들은 용산구가 아닌 새로운 지역이나 같은 구에서도 유사한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남 재정비 사업 지구는 사업 시행에 따른 기대 수요로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있었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와 같은 개발 지구의 높은 주택 가격이 형성되지 못 하였다. 또한 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아 전체 주택 수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하여, 용산구 내의 외국인들은 두 가지 방향으로 주거 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는 신축 주택으로 이동이고, 다른 하나는 노후화가 심화된 주택으로 이동이 바로 그것이다.

2. 신규 주거 지역의 형성과 주택 소비 지역의 이동

1) 신규 주거 지역으로 이동한 외국인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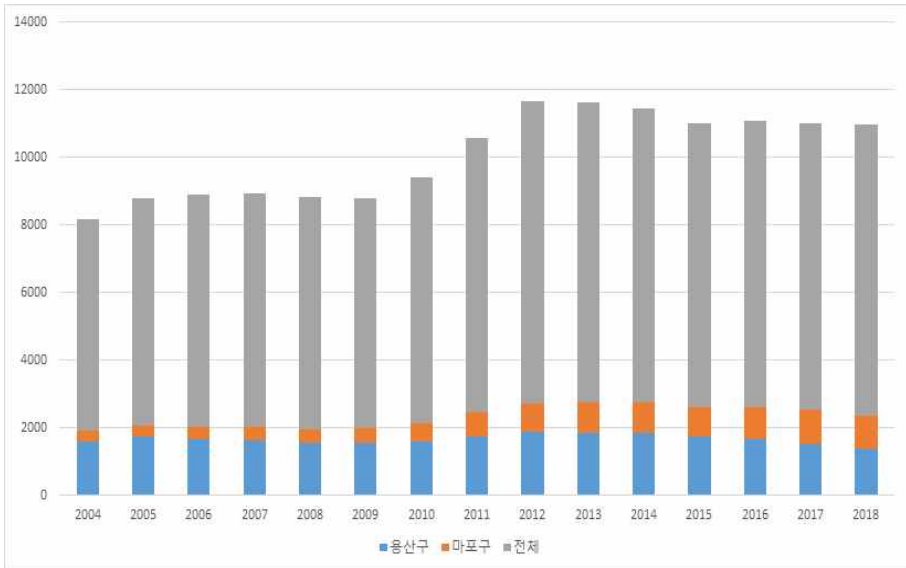
재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개발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별 외국인 인구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일본인 밀집지였던 이촌 1동의 인구는 2008년 이후로 연평균 감소율이 -4.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경리단길’로 유명해진 이태원2동의 경우 2008년 370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인구가 2016년에는 1400명으로 18.2% 증가하였다⁸⁾. 용산구의 주요 외국인 상권인 이태원1동의 경우도 -3.4%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외국인 밀집도가 낮았던 후암동, 원효로2동, 효창동, 용문동 등도 감소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군 밀집지였던 용산2가동, 한남동, 한강로동 등은 외국인 증가형태를 보이고 있어 용산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특정 지역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 내의 외국인 인구 중 일본인 인구의 변화는 신축 주택으로의 이동을 반영하는 예 중에 하나이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를 맺은 이후 일본대사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리틀 도쿄’라고 불리며 일본인 밀집지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일본대사관과 주요 기업들이 서울 도심에 있었던 반면, 당시 일본인 학교는 강남구 개포동에 있어 일본인들은 중간 지점에 있는 동부이촌동을 선택하게 되었다. 동부이촌동이 한강을 끼고 있어 환경이 좋은 데다, 밀집지 형성 초기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주요 기업들이 강북에 몰려 있어 출퇴근이 편리한 용산에 일본인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상암동으로 일본인 학교가 이전한 2010년 이후로 마포구 일본인 인구는 조금씩 증가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용산구의 경우, 전체 인구는 마포구에 비해 많지만 2012년 이후로 일본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평균 증감율로 따져보면 그 이동량을 체감할 수 있는데, 2004년과 2019년 사이 15년간 일본인 인구 변동량은 용산구의 경우 -1.02% 감소한 반면, 마포구의 경우는 8.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서울시 통계에서 제공하는 동 단위 외국인 인구는 2016년 1분기까지만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용산구와 마포구 일본인 인구 변화



자료: 서울시 통계

[그림 3] 상암동으로 이전한 서울 일본인 학교 전경



자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촌1동에서 마포구로 이동한 일본인들은 가족 단위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의 교육시설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포동 일대에 자리 잡았던 일본인학교는 1972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였다. 1982년에 재건립하였지만 시설 노후화와 1시간 이상의 통학시간으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여 왔었다. 그러다가 2010년 마포구 상암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에 부지 매입하여 이전했다⁹⁾.

이러한 일본인의 이동은 일본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었던 ‘동부이촌동’의 주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재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인 한강맨션, 왕궁, 한강삼익아파트 등 3곳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개발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하는 과정¹⁰⁾에 있다. 재건축 재추진으로 인해 2015년 11억 정도였던 한강맨션 매매가는 2019년 4월 현재 21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회수가 용이한 보증부 월세를 택하는 일본인들은 최근까지 전용면적 59㎡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 안팎 정도,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200만~240만 원 선의 주택을 임대해왔다. 그러나 재건축과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주거 환경이 공사를 위해 어수선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의 주거지 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신규 주거 지역으로서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한 신규 주거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해진 일본인과 서구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 주재원들, 평택 기지 이전에 합류하지 않은 일부 주한 미군 등이 원효로1동, 한강로동이나 마포구 등에 들어선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택하는 경우

9) 일본인 학교는 상암 DMC 외국인학교 용지 공급 공모에 참여했다 떨어졌음에도, 서울시 등에 재검토를 요청해 부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상암 DMC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년만에 학교 건립을 완료한 일본인 학교에 대해 특정 국가의 학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10) 예를 들어, 건축연한 46년을 넘긴 한강맨션(1971년)은 5층짜리 저층단지로서, 2003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졌지만 상가동의 임대료 하락과 타 업종 입점의 경쟁률 우려 등으로 2016년까지 조합을 구성하지도 못한 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상가동과의 분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 조합장 선출이 완료되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계획이 재개되었다.

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의 경우, 2006 ~ 2007년께 인근에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꾸준히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동¹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기업의 사택으로 이용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본 가재도구 및 가전 제품을 포함한 고급 빌라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직장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아 기업으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는 외국인들의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 기관 혹은 기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상 복합 아파트의 ‘럼프섬 프리페이먼트(Lump sum prepayment)’ 방식(무보증 선납 월세)의 선호로 인하여 이러한 형태의 지불이 가능한 집단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감정원 기준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가격 통계와 외국인 체류비자 분포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¹²⁾, 0.05 상관 수준에서 주재원과 기업투자 집단이 주상복합의 매매와 전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용산구에 다수 체류하고 있는 무역 경영(D-9)이나 교수 및 연구직 외국인 인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시장에 반응하지 않았다.

기관 혹은 기업이 주거비를 일괄 지불해줌으로서 일부 전문직 외국인들은 용산구(혹은 마포구)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특정 외국인 집단과 주택 가격, 주택 유형 등이 연결고리를 맺고 있으며, 외국인 집단을 가르는 특성으로 그들이 속하는 ‘주거 지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족, 인종만큼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국, 내외 연구들에서 외부와의 공간적 단절을 통해 특정 집단의 계층 유지를 위한 주택 형태로 분석하는 경우가 다수이다(Blakely and Snyder, 1999; Low, 2003; Bagaen and Uduku, 2010; 김석경, 2007; 조은진, 2007).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종의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화된 주거로 방어적 공간의 제공, 공용공간의 사적 공간화, 다양하고 질 높은 각종 편의시설과 서비스 제공, 대규모 기업형 관리전문회사의 출현과 같은 일반 주거단지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최정민, 2007).

11) 용산구 주상복합 전문 공인중개사 N씨(2017년 1월)

12) 전문직 외국인 이주자와 주상복합 아파트 거래 간의 상관관계

		주재원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연구
매매가	상관계수	.436*	.546**	.320	-.014	.100
	유의수준	.029	.005	.119	.947	.635
전세가	상관계수	.439*	.491*	.264	.076	.179
	유의수준	.028	.013	.202	.719	.392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

[그림 4] 2020년 완공될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현장



남영우, 김정희(2007)는 1983년 한남동의 한남외국인 주택을 시작으로 동일한 장소에 한남타워 II가 86년에 건설되고 그 이후에 91년 이태원타워가 조성된 사례가 한국에서 나타난 최초의 게이트드커뮤니티로 보고 강남구에 위치하는 최신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급 주택이 사회, 경제적 우월성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특권적(Prestige)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문직 외국인들의 주상복합 아파트로의 이동은 고급 주택 시장을 소비해 온 상류층과 연동되어 해당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 특성을 선별함으로써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 형성에 기여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일부 전문직 외국인들의 고급 주택 시장의 소비는 일종의 ‘가격 유지자(Price Holder)’로 작용하여 임대료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며, 그들의 거주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이미지로 작용하여 유사한 소득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공간구조가 CCTV¹³⁾와 같은 빗장지르기(gating)를 통해 단지

13) 게이트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를 형성하는 주거 환경 중에 범죄 예방과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경비원의 근로여부나 CCTV의 설치를 꼽을 수 있다. 서울시 자치구별 CCTV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순으로 설치대수가 많았으며, 특히 해당 지역의 방범용 목적의 CCTV 설치비율이 약 65%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여 내부인들 간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범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의 대응, 불안정한 사회체제에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반된 효과를 가지고 있다(정현목, 2012).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은 게이트드 커뮤니티의 특성과 폐쇄적인 주거 형태는 전문직 외국인들의 ‘타국 생활으로부터 느껴지는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한 수준의 사회, 경제적인 이웃의 인접’하여 거주한다는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주택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2. 노후 주택의 증가와 외국인 주거 지역의 확대

1) 재정비 사업 지연과 노후 주택의 증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일본인과 전문직 외국인들과는 달리, 저렴 주거를 찾는 외국인들은 용산구로 이동하고 있다. 재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재개발을 기대하고 보수를 진행하지 않는 주택들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후 진행으로 인해 더 이상 내국인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동한 일본인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이촌1동과 노후 저렴 주거지로 부상한 보광동의 주택 유형을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촌1동의 경우 압도적으로 아파트가 가장 많은 주택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보광동의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 이촌1동과 보광동 주택 유형 비교

(단위: 호)

용산구	단독 주택	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소계	5,691	8,038	35,343	4,029	15,206	642
이촌1동	X	X	9,500	19	11	X
보광동	585	1,295	550	81	895	38

자료: 서울시 통계

재정비 사업 지역으로 노후 주택이 증가하면서 저소득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동반되었다. 한남 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지구 내 효과적인 주거 대책 마련을 위한 주거 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보광동의 경우 전체 8,697 세대 중 2,175세대가 자가 소유자로, 세입자는 6,522세대로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는 평균 11년 이상 보광동에 거주하였으며, 월세 세입자의 경우는 1년 이하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광동의 경우, 재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분양 혜택을 볼 수 있는 인구는 자가 소유자와 장기 세입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주택 분양이나 주거 이전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광동은 단독, 다가구 주택 밀집지로 15-20평형의 적은 면적의 주택이 많고, 전체 주택수의 90%가 방 3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노후 불량 자가 소유 비율은 729세대로 약 8.4%에 해당하며, 주변지역인 이태원동(7.7%)이나 한남동(7.8%)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주거 실태 조사 당시였던 2010년 기준으로 세입자는 전세의 경우, 평균 5천만 정도를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약900만원에 평균 37만원을 매달 지불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이후 자가 소유자들은 재정착 의지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분양주택 입주를 희망하였으나, 세입자들은 기존과 유사한 임대료 수준을 지닌 임대주택으로 이전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재정비 사업 지역으로 노후 주택의 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보광동 등과 같은 주택 가격이 하락한 지역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의 외국인¹⁴⁾들이 유입하기 시작하였고 슬럼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광동 일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같이 2년 이상의 장기 계약보다는 월단위의 단기 계약을 선호하며 이러한 계약방식은 재정비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주거실태조사(2010)에 따르면, 보광동 일대에 거주했던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이 많았다는 점과 그들의 상당수는 자가를 통한 임대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 이주자를 통한 임대료 수익은 중요한 소득원이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비 사업 지정 이후, 개발 시행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임차인들은 주거 이전비 부담에 따른 임대인의 압력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고, 방치되다시피 한 주택을 비워두기 싫었던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한시적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을 임차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을 계기로 현재의 외국인 주거지역이 형성되었다.

14) 해당 지역 거주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보광동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신축 건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문이 고장 나거나 물이 새도 집주인이 제대로 고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한국말을 잘 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지원 단체의 한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집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임대’ 전단을 보고 찾아와 거래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입차 후 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언어적인 문제나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제대로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표 3> 보광동 지역 주거실태 현황 요약

점유유형별 주거 현황			
구분	자가	전세	월세
평균 거주기간(년)	22.2	7.9	4.5
평균 동거가족수(명)	3.5	3.19	2.57
전용면적 10평 미만(%)	1.2	8.7	20.9
임대료			
구분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
평균 금액(만원)	4.984	896.5	36.8
가구주 특성			
구분	세입자	노후 불량 소유주	비노후 불량 소유주
가구주 평균 연령(세)	47.0	56.9	55.0

자료 : 용산구청 주거실태조사(2010)

2) 저렴 주거 소비자로서 저소득층 외국인의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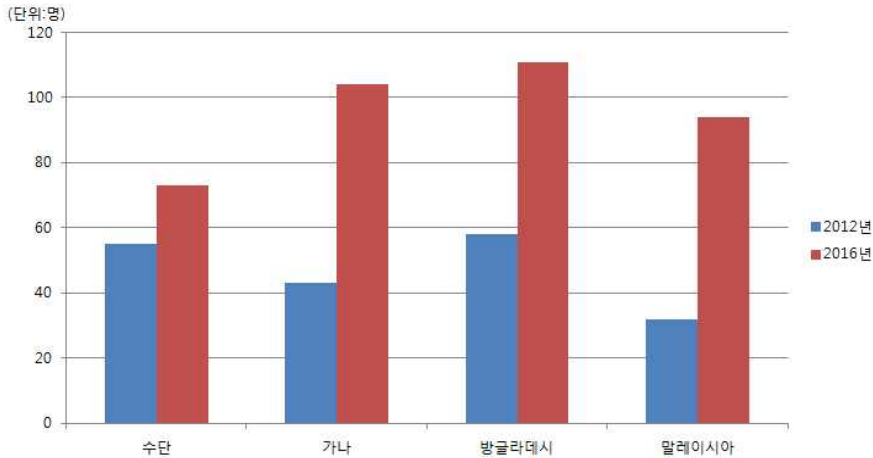
재정비 사업 지연으로 노후 주택이 많은 보광동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은 되도록 보증금을 낮게 잡기를 희망하며, 보증금 없이 30-40만원 대의 월세를 지불하거나 낮은 보증금을 지불해도 되는 주택을 찾는다. 아프리카, 아시아 출신의 외국인들이 용산구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 보광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통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 인구 통계 기준으로 2016년에는 수단, 방글라데시 등의 출신 외국인들의 인구가 2012년과 비교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방글라데시 인구의 경우 서울시에 체류 하고 있는 전체 방글라데시 인구의 약 17%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어 저렴한 주거를 찾는 외국인 인구의 일정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보광동에는 용산구에 다수 체류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언어나 출신 지역이 유사할 경우, 대체적으로 밀집 경향을 보이는 일반적인 외국인 주거지와는 달리, 해방촌의 나이지리아인들은 규모는 작지만 그들만의 주거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해방촌 일대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이주자들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주로 기업투자자(D-8), 동반(F-3), 기타(G-1) 등으로 한국 정부에서는 아프리카계

[그림 5] 보광동 지역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적별 외국인 인구 변화



자료출처: 서울시 통계

국가에게 노동비자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비자를 가진 자는 거의 없다. 해방촌에 집중되는 이유는 종교생활을 지원하는 교회들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의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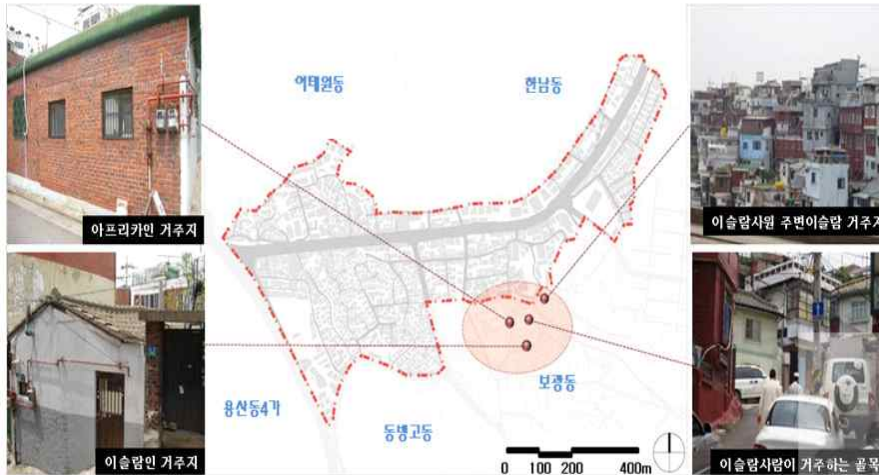
인근 지역 부동산 중개인의 인터뷰¹⁵⁾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이주자들은 평균 보증금 1000만원미만에 월세 70만 원 정도 주거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원룸보다는 거실과 부엌이 구분되는 투룸을 선호하며 해방촌 안쪽 깊숙이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밀집하여 살고 있다. 이들을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한국 집주인들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에게 세를 내주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집세에 대한 갈등이 한국인보다 덜하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내어준 주택 구조는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것이 되어 다시 외국인들에게 임대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 다른 저렴 주거 소비자로서 조선족¹⁶⁾들은 용산구 내에서 미국과 일본인 다음으로 많은 외국인이었지만 최근 급격한 감소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동단위로 살펴보면 이들은 ‘단칸방’이나 ‘반지하’ 등과 같은 노후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은 후암동, 보광동, 남영동 일대에 밀집되어 있었는데, 이 지역을 포함하여 2019년 현재, 모든 동에서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였다.

15) 해방촌 인근 공인중개사 O씨(2017년 5월)

16) 본 연구에서 분석한 조선족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에 한하며, 귀화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6]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외국인 주요 밀집지



자료 : 서울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2008)

조선족의 인구 변화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 이유로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유사한 임대료로 주거지를 찾을 수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등과 대체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백일순, 2017).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조선족 밀집지인 대림 2동은 2013년까지 약 8천 명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증가하며, 2019년에는 약 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인다. 반면에 용산구 지역에서는 2010년 이후로 증가하던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점은 용산구의 재정비 사업이 재개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조선족이 가장 많이 용산구에 거주했던 2008년은 해당 인구가 3,430명으로, 1,771명인 미국, 1,574명인 일본인보다 훨씬 많이 살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감소하면서 2019년에 이르면 최대 인구의 50%에도 못 미치는 1,321명만이 용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정비 사업의 지연은 주택의 질을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며, 저소득층 외국인들이 해당 주거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벽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만 조선족과 같이 주택 소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지역이 존재할 경우, 주택의 질의 악화는 오히려 해당 주거 지역으로부터의 유출요인이 되어 인구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VI. 외국인 주거지 이동의 특성과 주거 과정

용산구 한남 재정비 사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주거 지역의 변화 양상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의 주거 지역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의 주거지는 서로 다른 작동 방식으로 인하여 분리¹⁷⁾되어 있는데(백일순, 2018), 첫 번째 외국인 주거 지역의 변화는 도시 계획안 실행과 그에 따른 주택 공급 변동으로 인하여 유사한 임대료, 주거 환경을 가진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하는 것이다.

학교나 기관, 기업 등의 이동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용산구의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주거 지역은 기존 주거지와 주거 환경은 유사하지만 기존의 거주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새로운 주택 소비 지역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과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전한 일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촌1동의 대표되었던 일본인 밀집지는 조금씩 중심점이 용산구를 벗어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주택 공급의 지연, 중단 등으로 인하여 노후 주택이 증가한 지역에 저소득층이나 외국인들이 유입되어 외국인 주거 지역의 비중이 커지는 형태이다. 2017년 1월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정비사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 지역 내에는 약 4,890호가 길게는 15년째 폐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방치된 집들이 늘어나게 되면, 개, 보수 등과 같은 관리가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집을 고치기 쉽지 않은데, 정비 사업 구역 내에서는 법적으로 개, 보수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용산구의 보광동 지역은 재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주택의 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면서 일부 아프리카, 이슬람권 외국인들이 세입자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렴 주택을 소비하고자 하는 외국인들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않았던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에 비해 2016년 보광동에 거주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인구는 모두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슬람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구는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저렴 주거가 외국인 인구를 유인하는 효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인 주거 지역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거나 규모나 형태에 있어 동일하게

17) 외국인 주거 지역은 주택의 수요-공급 관계에 상관없이 임대료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외국인 대상 인프라가 부족한 신규 주택 공급 지역으로는 외국인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내국 인과는 분리된 주거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국의 주택 공급과 같은 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는데, 하나의 과정으로서 주거(housing as a process)라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Turner, 1972). 보통 명사(noun)로서의 주거는 생산물이나 상품으로 간주되지만, 주거 과정(Housing process)이라는 개념에서 지칭하는 ‘주거’라는 용어는 동사(verb)로서 사용 방식이나 행위로 다루어진다.

또한 주거 과정은 단일한 스케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 스케일적인 측면에서 동시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주거의 선택, 이동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다양한 주거 선택 경로, 본국과 이주국의 주거 지역에 소비자로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초국가적 소비 행위와 주거 경관의 변화, 주택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주거 입지의 변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국가적 주거 과정을 설명해보자면, 외국인 이주자는 주거지 선택 요인에 있어서 본국의 주거지 구매와 이동뿐만 아니라 이주국에서 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과 실제 사용하는 주거지 입지, 가격, 특성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 체류 조선후의 경우,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자신의 고향에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기적인 체류를 고려하여 한국에서도 주택 구매를 시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과 한국 두 국가의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주택의 수요와 공급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다(백일순, 2018). 이를 통해 주거 과정은 단선적이거나 혹은 단일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스케일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외국인 주거 지역의 형성과 변화는 다양한 주거 과정의 역사가 복합적으로 얹혀 지금의 형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거 과정으로서 외국인 주거 지역의 변화는 사회,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결정과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Lindamood, 1974), 주거 지역의 규모나 형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는 의미까지 함께 바뀌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주거 지역의 구조적 변화는 도시 개발 정책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각 집단이 소비할 수 있는 주택 유형, 가격 등의 변동과 관련하여 내, 외국인 주거 지역의 규모와 형태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과정으로서 주거(housing process)와 외국인 이주자의 관계

개인적 주거과정	도시적 주거과정	초국가적 주거과정
주거의 선택, 이동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주거 선택 경로	도시 재구조화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하는 이주자의 주거 입지 변화과정	본국과 이주국의 주택시장의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이주자의 초국가적 소비행위와 주거경관의 변화

V. 결론

정비 사업과 같은 대규모 주택 개발은 대대적인 도시 공간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이주자들의 주거 지역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설령 개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다고 할지라도, 해당 논의가 지역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는 순간 모든 거주자는 주거 이동에 대한 고민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외국인들은 재개발 사업과 같은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주거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에게는 한정적인 주거 정보와 비용만으로 주거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 압력으로 인한 주거 이동의 결과는 이미 존재하는 외국인 집거지의 밀도를 높이거나 유사 조건의 신규 주거 지역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이러한 주거지의 이동과 변화는 재정비 사업을 통해 야기되는 외국인의 주거이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비)자발적인 이주 외에는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 이전에 거주하였던 주거 조건과 유사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밀집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 외국인의 이동만으로 주거지가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외국인의 이동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상암동 지역의 일본인 인구의 증가는 해당 지역의 주택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일본인 학교 이전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자녀가 있는 일본인들의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의 이동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자료의 한계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관

련자 인터뷰나 설문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 통합의 문제는 기존 정책이 고수해왔던 사회-문화적인 통합, 경제적인 배려 이전에 ‘주거 안정성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외국인 간의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주자들은 공간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거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갈등의 해결에 있어 소득 격차에 따른 내국인 간의 Social Mix가 시도되고 있지만, 외국인 주거 문제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분양-임대 거주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Social Mix가 주거를 통한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해줄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들의 주거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외국인 주거 실태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우원. 2007.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 《부동산학연구》 13(3): 65-87.
- _____. 2011.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자영업자의 재정착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 : 재정비촉진지구 자영업자의 의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9(2): 1-14.
- 강현호. 2008. “뉴타운 건설과 관련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3-54.
- 김경수. 2008. “재정비촉진사업 구역설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4): 76-84.
- 김석경. 2007.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단지 환경적 특성 및 범죄안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3(6): 61-70.
- 김선명. 2012. “다문화가정의 주거실태 및 부동산 인식에 관한 연구 : 서울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김종보. 200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35집: 71-90.
- 김철홍·박재홍. 2009. “상인들의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재정착에 대한 의사 결정요인에 관

- 한 연구: 오산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내 상인을 대상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1(3): 239-252.
- 남영우·김정희. 2007.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폐쇄적 공동체의 생태와 특성 비교: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1): 51-61.
- 백일순. 2017. “외국인 이주자 임대 주택 시장의 분화와 주거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백일순. 2018. “외국인 주택 시장과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370-392.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편. 2013. 『디지털 미디어 시티 10년사 및 발전방향』서울산업통상진흥원.
- 서울시정연구원. 2008. 『서울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 및 장기구상』 서울특별시 외국인생활지원과.
- 신현방. 2016. “발전주의 도시화와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저항의 연대.” 《공간과 사회》 57: 5-10.
- 심희선. 2011. “중·소도시 뉴타운지구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의식 및 심리조사 연구: 김포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안균오. 2011. “사회 정의론의 정책규범을 활용한 도시재정비사업 평가와 정책대안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용산구청. 2010. 『용산구 재정비 사업 관련 주거 실태조사』(미간행)
- 이동수. 2014. “도시재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66집: 73-201.
- 이인석. 2015. “도시재생사업의 실태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사업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조명래. 2010.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평가와 대안 모색.” 《부동산법학》 제17집: 47-65.
- 조문현. 2007.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정책연구》 8(2): 69-89.
- 조윤희. 2009. “금천구 시흥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 관한 연구 : 서민 세입자 다문화가정 주거정책 방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 조은진. 2007. “상류층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배제의 방식: 강남 타워팰리스 주거 공간 및 공간 경험 분석.” 《경제와 사회》 76: 122-163.
- 전상익. 200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국토연구》 통권 305호: 50-62.
- 정현목. 2012.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3(1):37-56.
- 최승필. 2012. “재개발구역 해제 등에 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8집: 131-160.
- 최정민. 2007. “게이티드커뮤니티 주거단지와 그 실태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일본의 저층 주거단지의 사례.” 《주택연구》 15(2): 99-132.

- Begaeen, Samer and Ola Uduku(eds). 2010. *Gated Communities: social sustainability in contemporary and historical gated developments*. Earthscan.
- Blakely, Edward J. and Mary G. Snyder. 1999. *Fortress America: gated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Fainstein, Susan, Gordon, Ian and Michale Harloe. 1992. *Divided cities*. Cambridge.
- Fol, Sylvie. 2012. "Urban Shrinkage and Socio-Spatial Disparities: Are the Remedies Worse than the Disease?." *Built Environment* 38(2): 259-275.
- Henry, Nick, McEwan, C., and Jane Pollard. 2002. "Globalization from below: Birmingham – postcolonial workshop of the world?." *AREA* 34(2): 117-127.
- Higham, John. 2002. *Strangers in the land: Patterns of American nativism, 1860-1925*. Rutgers University Press.
- Krase, Jerome. 2005. "Poland and polonia: Gentrification as ethnic aesthetic practice and migratory process" In *Gentrification in a global context*, edited by R Atkinson, G Bridge, Routledge.
- Levitt, Peggy, and Nina G. Schiller. 2004. "Conceptualizing simultaneity: A transnational social field perspective on society."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3): 1002-1039.
- Lindamood, Suzanne. 1974. "Housing as a Process: A Position Paper on Housing Education." *Housing Educators Journal* 1(2): 22-28.
- Low, Setha. 2003. *Behind the gates: Life, securi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in Fortress America*. Routledge.
- MacLeod, Gordon, and Mark Goodwin. 1999. "Space, scale and state strategy: rethinking urban and regional governan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3: 503-527.
- Marcuse, Peter and Ronald Van Kempen. 2002. *Of states and cities: The partitioning of urban space*. Oxford University Press.
- Menahem, Gila. 1996. "Urban restructuring and the absorption of immigrants: a case study in Tel-Aviv." I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in Post-Industrial Societies*, edited by Naomi Carmon, Palgrave Macmillan UK.
- Mollenkopf, John H., and Manuel Castells. 1991. *Dual City: Restructuring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Nyden, Philip, Edlynn, Emily and Julie Davis. 2006. *The differential impact of gentrification on communities in Chicago*. Loyola University.
- Oswalt, Philipp. 2005. *Shrinking Cities, Volume 1: International Research*. Ostfildern-Ruit: Hatje Cantz.
- Portes, Alejandro. 2000. "Globalization from below: the rise of transnational communities."

- in *The ends of globalization: Bringing society back in*, edited by Kalb, D. Rowman & Littlefield.
- Roberts, David J. and Minelle Mahtani. 2010. "Neoliberalizing race, racing neoliberalism: Placing "race" in neoliberal discourses." *Antipode* 42(2): 248-257.
- Schiller, Nina G. and Ayse Caglar. 2009. "Towards a comparative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177-202.
- _____. and Thomas Faist. 2010. *Migration, Development, and Transnationalization: A Critical Stance*. Berghahn Books.
- Smith, Neil. 2002. "New globalism, new urbanism: gentrification as global urban strategy." *Antipode* 34(3): 427-450.
- Turner, John F C. 1972. "Housing as a Verb." In *Freedom to Build: Dweller Control of the Housing Process*, edited by Turner, J, F, C, and Fichter, R, The Macmi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Walks, R. Alan. 2001. "The Social Ecology of the Post-Fordist/Global City? Economic Restructuring and Socio-spatial Polarisation in the Toronto Urban Region." *Urban Studies* 38(3): 407-447.
- Wilson, David. 2007. *Cities and race: America's new black ghetto*. Routledge.

[인터넷 자료]

서울통계 stat.seoul.go.kr

용산구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http://www.ydp.go.kr/>

용산구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http://www.yongsan.go.kr/>

인구총조사(2010, 2015) kosis.kr

한국감정원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https://opengov.seoul.go.kr/public/90135>

2025서울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6044>

[신문기사]

뉴스핌, 2018. "한남뉴타운 재개발사업 '미그적'..조합에 쏠린 '눈'", 2018년 4월 22일
(Available from www.newspim.com/news/view/20180420000194, 최종검색일 2019년 5월 29일)

(2019.06.15. 접수; 2019.06.28. 수정; 2019.06.29. 채택)

The movement and change of immigrants' residential area according to urban restructuring

Yilsoon Paek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Large-scale housing developments, such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 closely related to urban changes result in immigrants' housing markets directly and indirectly. Immigrant residential areas have been more concentrated on certain areas through new housing supply such as urban restructuring projects or moved to other specific areas with similar rental conditions. Also, old abandoned housing increases the influx of low-income immigrants, which results in the expansion of immigrants' residential area.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immigrants' residential mobility is not fixed in certain areas and forms but moves or changes its structure according to spatial changes such as urban development policies.

Key Words: Immigrants' residential area, Urban Restructuring, Housing renewal projects, Housing process, Residential mobility

연구논문

대도시의 외로운 이방인들: 국내 이주 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윤 지원 **

이 연구는 도시 생활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도시라는 공간의 특성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대도시가 많은 타지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주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주 행위는 필연적으로 기존 사회관계로부터의 단절을 동반한다. 그리고 도시라는 공간은 이주 이전에 살았던 장소보다 불안정하고 덜 편안한 것으로 묘사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도시의 특성에 대한 피상적 관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도시라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질문을 던진다. 또한 이주민, '이방인'이 집중된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사회적 관계를 더욱 쉽게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논문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10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근 3년 간의 이사 경험이 응답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봤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만족할 확률이 낮으며, 이 효과는 거주지를 통제변수로 사용했을 때도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또한 대도시라는 거주 환경은 이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켜주는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음이 검증됐다. 한편, 대도시와 기타 지역을 오가며 이사한 사람들, 그리고 기타 지역 간에서만 이사한 사람들의 경우 이사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낮다. 이 결과는 대도시라는 공간이 오히려 이주민에게는 덜 가혹한 공간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주제어: 도시사회학, 이사, 국내 이주, 사회적 관계, 도시 생활

* 이 연구에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석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 jiwoonyun@snu.ac.kr. 주저자. 교신저자.

I. 서론

현대인의 삶은 쓸쓸하고 외로운 것으로 묘사되고는 한다. ‘군중 속의 고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정서로 자리 잡았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이 고독한 현대인의 서식지는 ‘군중’이 존재할 수 있는 대도시다. 대도시는 혼자서 노는 ‘혼밥’과 ‘혼술’ 문화의 진원지이며, ‘차가운 도시 남자’ 차도 남과 ‘까칠한 도시 여자’ 까도녀와 같은 용어는 도시공간의 냉랭한 사회관계를 드러낸다. 현대인에게 고독, 외로움 그리고 인간적 관계의 상실은 대도시 생활과 불가결의 관계에 있는 필요악으로서 상상된다.

도시사회학의 전통에서도 대도시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도시 공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전제로서 기능해왔다. 도시사회학의 태동기 때부터 대도시는 사회적 고립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근대성의 부정적인 면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간으로서 인식되었다. 최초의 도시사회학자 중 한 명인 게오르크 짐멜(Simmel, 1971)은 대도시가 조직되는 원리 자체가 주민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고 봤다. 인구 밀도와 다양성이 높은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스로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물과 사람에 덤덤한 태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대도시의 주민들은 타인의 개별성에 눈을 감고, 인간성과 온기가 거세된 사무적인 관계를 맺도록 사회화 된다. 이런 관점은 아직까지 도시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도시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결국 도에서 상실되었다고 상상되는 ‘전도시적(pre-urban)’ 관계를 되찾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삼는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도에서 ‘탈도시’적인 공간과 관계를 재현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임동근·김종배, 2015). ‘도시적’ 삶에 너무나도 지친 일부 사람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 희망 찾기를 포기하고 평화롭고 전원적인 삶, 그리고 농촌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을 찾아 귀농 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마상진, 2018).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한다. 우선 인구 규모와 다양성의 증대가 진정으로 기형적이고 파편화된 사회적 관계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짐멜은 대도시의 인구학적 특징들이 사회적 고립을 초래했다고 보았지만, 오히려 대도시의 군중 속에서만 가능한 ‘익명성’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대도시 군중의 ‘다양성’은 어떤 소수자라

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관계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다(Waldinger, 2001; Nash & Gorman-Murray, 2017). 그리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받는 도시의 자극적인 풍경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분산시키면서, 길거리의 노점상들이 눈치 보지 않고 비공식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숨을 공간’을 만들어 준다(Duncier, 1999). 최소한 지금 언급된 여러 소수자들에게 대都市는 여러 기회들이 열려있고,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과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상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도시라는 공간에 너무나도 쉽게 부여된 단절과 고독의 이미지가 실재 도시의 모습과는 무관한 상상된 허위의 표식은 아닌지, 혹은 심각하게 일반화된 이미지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대도시 주민들의 고독함,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사회관계가 도시라는 공간적 특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안으로는 무엇이 존재할까? 이 논문은 국내 이주 경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 짓는 중요한 특성은 이주민 비율이다. 도시화라는 현상은 인구의 자연증가로는 일어날 수 없으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인구유입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라는 현상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으로 이해될 수 없다. 새롭게 이사해온 이방인에게 이주는 기존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이자, 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열쇠를 찾는 여정이다(Schuetz, 1944). 그 과정에서 이주민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들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당면한다. 농촌보다 도시에 이주민이 더 많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도시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인의 고독은 ‘도시 그 자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사’라는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이사 경험이라는 변수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사 경험이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과 별개의 변수로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방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공간의 특색이 이사 경험으로 인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추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조절 효과를 검증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의 방향, 즉 출신지와 목적지의 관계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분석을 시도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도시공간과 사회적 관계

‘도시’와 ‘도시적인 것(urba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도시사회학의 태동기부터 이어져오는 전통적인 질문이다. 도시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내린 사람들 중, 워스(Wirth, 1938)는 도시를 인구 규모, 인구 밀도, 그리고 인구의 다양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들로 정의할 수 있다고 봤다. 워스가 주목한 도시의 인구학적 특징은 도시의 사회관계에 농촌의 사회관계와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부여한다. 농촌은 인구 규모와 다양성이 낮아 주민들이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반면, 대도시는 오늘 만난 사람을 내일 만날지가 불확실한 환경이다(Simmel, 1971). 이런 상황에서 모든 타인과 진심을 담아 상호작용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피곤한 일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극에 둔해지고, 일상적 상호작용에서 속내를 감추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상호작용의 특수성은 사라지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만족감은 저하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퇴니스(Tönnies, 1917)는 농촌의 공동체(Gemeinschaft)적 관계들이 도시적이고 결사체(Gesellschaft)적 관계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보다 사무적인 사회적 관계가 형성됨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의 상실은 대도시 생활과 원론적으로 엮여있는 문제인 듯하다.

대도시에서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사실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Rodgers, 1980; 박대식·마상진, 2007; 차원규, 2012). 주목할 부분은 대도시가 삶의 질 전반에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에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박대식과 마상진의 조사(2007)에서 도시 주민들은 소득, 소비, 직업과 같이 경제적 영역과 관련된 지표,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복지 관련 지표에 있어서는 농촌주민들보다 더 높게 응답했지만, 안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이웃관계와 같이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는 더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웃관계와 지역공동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로저스(Rodgers, 1980)의 연구, 그리고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독거노인의 관계 만족도가 더 낮음을 밝혀낸 김은정(201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대도시가 제공하는 객관적 조건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만족도는 농촌보다 낮게 보고된다는 점이다. 대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거리가 좁아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확률

도 높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대도시의 공간적 특수성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킨다는 전통적 도시사회학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의 또 다른 특징에도 주목해야 한다. 도시는 단순히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다. 도시는 태생적으로 도시 외부로부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야만 생겨날 수 있는 공간이며, 대도시의 인구규모는 내부의 자연증가율로는 설명될 수 없다. 도시에 이주가 집중되는 현상은 국제 이주와 국내 이주를 가리지 않는다. 월딩어(Waldinger, 2001)는 미국으로 오는 대다수의 이주민들이 5개의 대도시에서 정착한다는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주는 매우 도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이주의 도착지도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한국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도시, 특히 서울에 경제적·문화적 기회들이 집중이 되며 끊임 없이 대도시로, 서울로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박정미, 2017; 임운서·안윤정, 2017). 그렇다면 도시의 공간적 특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현상,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 상실이 일정부분은 구성원들의 이주 경험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선 이주 경험과 삶의 질, 그 중에서도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이주경험과 사회적 관계

일반적으로 이주 현상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인구학적 모델들은 이주를 비용과 효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동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서 이주는 도착지의 경제적 유인, 혹은 출신지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촉진된 행위로 파악되며, 더욱 나은 조건이 제공되는 공간을 향해 이동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런 시각에서 이주는 필연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동반한다(Switek, 2016). 특히 2013년에 영국에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된 한 연구는 이주를 실행하는 시점에 삶의 만족도가 확연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 냈는데(Nowok et al., 2013), 이는 이주와 삶의 질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이주 경험이 전반적인 삶의 질의 개선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회적 관계의 주요한 특징 중 ‘축적성’을 꼽을 수 있다(Hinde, 1979). 매 상호작용마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상호작용의 성격, 깊이, 빈도가 다음의 상호작용에 영

향을 끼치면서 관계가 ‘쌓여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는 단순히 공간 A에서 공간 B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이 기존에 축적해 둔 사회적 관계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이다. 이주민들에게는 기존의 인적 네트워크를 떠나 새로운 네트워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이 요구되며(Fu and Hao, 2017),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한 네트워크에서 유리되었다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한 사람들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또한 이주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Schuetz, 1944).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이주민은 자신이 기존 집단에서 습득했던 사회적 규칙들, 혹은 ‘자연적 태도’들이 더 이상은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게 된다(김광기, 2007). 이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자연적 태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미 기존에 축적된 관계들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주민들은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심지어 이들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택한 선택지조차 선주민들에게는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안윤정과 임윤서(2018)는 서울로 상경한 여성들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인맥을 쌓기 위해 학내 동아리에 가입하지만 서울 출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맥은 동아리 밖에서 형성된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한 바 있다.

선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자연적 태도’를 지닌 이주민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꺼려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김광기(2007)는 ‘이방인’이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정이 없는 ‘무채색 인간’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토박이들이 “열광하고 집중하는”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그 의미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매우 텅텅한 태도로 대하면서 선주민과의 사회적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선주민들은 이주민이 지니고 있는 이질적 특성에 집중하며 이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정형호, 2011; 임윤서·안윤정, 2017).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질적이고 공감할 수 없는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들의 낙인이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넘어서 그들을 더욱 손 쉽게 범죄의 표적으로 선택하는 현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Zhong, Xu and Piquero, 2017). 기존의 관계로부터의 물리적 분리, 새 관계 형성을 막는 문화적 장벽, 그리고 선주민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이주민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로부터 만족감을 얻는 과정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만족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Schuessler and Fisher, 1985), 자신이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는 내가 누구를 준거

집단으로 삼는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Rodgers, 1980; Ackerman and Paolucci, 1983). 이미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은 비교적 관계가 돈독해보이는 다른 도시 주민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이 증폭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지방출신 여성들의 경우, 주변의 서울 출신 포래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관계의 빈약함을 인지하기도 하며, 서울 출신들은 알고 있지만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사회문화적 코드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 큰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고 얘기한다(안윤정·임윤서, 2018). 또한 준거집단에는 이주하기 전의 자신의 모습이 포함할 수도 있다. 만일 이전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현재 거주지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절대적으로 덜 만족스럽다면, 둘 사이를 비교할 수 있는 이주민은 그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인지해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이주의 공간적 맥락

하지만 모든 이주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주는 공간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출신지와 목적지,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 이주로 인한 효과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출신지와 목적지가 질적으로 비슷할 경우, 즉 두 장소의 ‘자연적 태도’가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출신지와 목적지의 자연적 태도가 비슷할 경우 이주민은 자신이 익숙한 ‘언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선주민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더 적게 느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대도시의 특유의 ‘이동성’이다. 간스(Gans, 1991)에 의하면 잦은 주거 변동과 높은 이동성이야말로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거주민들은 농촌 거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끊임없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모습을 보인다. 대도시로 이사한 뒤에도 한 장소에 정주하는 경우가 드물며,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같은 대도시 내에 머물더라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도시는 국외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 국내 기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도시 내부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방인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방인의 공간으로서 대도시는 이주민들에게 호의적인 요소들을 몇 가지 지니고 있다. 우선 이미 이주민 규모가 상당한 대도시에서는 출신지에 따른 이주민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발달하여 이주민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의 공백을 채운다(Waldinger,

2001; 정형호, 2011; 박순희·조원탁, 2013). 이처럼 대도시에 존재하는 동향 이주민 네트워크의 도움은 이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으로 대도시에서는 이주해온 ‘이방인’이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선주민’의 구성도 기타 지역과 다르다. 대도시에는 이주의 경험을 지닌 사람이 워낙 많기에, 언뜻 보기에는 ‘선주민’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주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방인들은 새로운 ‘자연적 태도’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자연적 태도’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그리고 절대적이거나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감광기, 2007). 한편으로 이방인은 서로 다양한 문화적 언어들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으며 새롭게 섞일 수 있다는 사실에도 눈을 뜨게 된다(Said, 1986). 이런 특징들은 ‘이주 경험이 있는 선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이주민과 출신지가 같지 않더라도 해당 이주민의 경험에 공감해주거나 최소한 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이주의 경험이 없는 선주민의 경우에도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이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은 이질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장기간의 긍정적인 교류가 지속될 경우 이질적 집단에 대한 편견이 수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선주민도 이주민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타 지방 출신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축소될 수 있다. 즉 대도시로 이주해 오는 이주민들은 동향 이주민 네트워크의 존재, 선주민 사이에 만연한 이주 경험, 그리고 접촉 효과의 도움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을 수 있다.

III. 연구 가설과 변수

1. 연구 가설 및 데이터

위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다음의 가설들을 세울 수 있었다.

가설 1.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이사 경험의 효과를 축소시킬 것이다.

가설 3. 이질적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을 것이다.

첫 번째 가설은 국내 이주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특히, 거주지역을 통제변수로 활용한 뒤에도 이주 경험이 유의미한 독립변수로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가설과 세 번째 가설은 국내 이주로 인한 효과가 공간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을 통해 이론적 검토에서 추측한 대로 대도시가 이방인에게 호의적인 공간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은 ‘자연적 태도’ 이론에 입각해 출신지와 목적지의 관계가 국내 이주로 인한 효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 8차, 9차, 10차 조사 데이터가 활용됐다. 한국복지패널은 가구용 설문지와 가구원용 설문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사에 대한 문항은 가구 설문지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문항은 가구원 설문지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에 등록된 가구원은 총 27127명이지만, 그 중 7차부터 10차까지 총 4회의 조사에 모두 등록된 가구원은 15608명이다. 이 중 가구원 4회의 설문조사 중 한 번이라도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3323명이 결측인원으로 빠지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12285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결측인원이 높은 이유는 가구설문지와 달리 가구원설문지는 가구원 중 15세 이상이자 중·고등학생이 아닌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세 미만이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인 가구원은 패널조사데이터에는 등록되지만 개인별 가구원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게 된다.

2. 변수 정의 및 측정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구원용 설문지의 일부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을 조사한다. 그중 <표 1>에 나와있는 3번 문항은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에서 응답자의 만족도를 묻고 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1)이 “매우 불만족”, (5)가 “매우 만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중 “매우 불만족”과 “대체로 불만족”(1, 2)을 ‘불만족’으로, “그저 그렇다”(3)를 ‘보통’, 그리고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4, 5)을 ‘만족’으로 재분류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표 1> 생활 만족도 조사 문항

문 3)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귀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가 건강	①	②	③	④	⑤
나 가족의 수입	①	②	③	④	⑤
다 주거 환경	①	②	③	④	⑤
라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마 직업	①	②	③	④	⑤
바 사회적 친분관계	①	②	③	④	⑤
사 여가생활	①	②	③	④	⑤
라 그럼, 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귀하는 전반적으로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요약사항>

- 위 주거환경의 경우 가구원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 위 가족 관계에서 가구원 외의 경우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을 포함하여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 위 직업에서 무직, 전업주부 등도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기하도록 합니다.

출처: 201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가구원용, 한국복지패널.

주 독립 변수는 이사 경험이다. 이사 경험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가구용 설문 중 주거 항목의 1번 문항(“귀력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이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을 활용했다. 10차 조사를 기준으로 근 3년 간(8차, 9차, 10차) 이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가구원은 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한편으로는 7차부터 10차까지 주소지 코드가 변경된 경험 이 있음에도 이사 경험이 없다고 보고한 가구가 있었는데, 이런 가구에 속한 가구원 들도 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재분류했다. 따라서 이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가구 중 주소지 코드의 변동이 없는 가구만 이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사의 방향도 독립 변수로 사용하기 위해 7차부터 10차조사까지의 주소지 코드를 활용했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주소지를 두가지 방법으로 분류하는데, “5개 권역별 지역구분”에서는 주소지를 (1) 서울, (2) 광역시 (3) 시 (4) 군 (5) 도농복합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7개 권역별 지역구분”은 (1) 서울, (2) 수도권(인천/경기), (3) 부산/경남/울산, (4) 대구/경북, (5) 대전/충남, (6) 강원/충북, (7) 광주/전남/전북/제주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권역별 지역구분” 변수를 활용, 이 중 서울, 광역시 (1,2)를 ‘대도시’로, 그리고 시, 군과 도농복합군(3, 4, 5)을 ‘기타’로 분류했다. 이사 경험 변수와 주소지 변수를 기준으로 (1)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 (2) 기타 지역 간에 서만 이사를 한 사람, (3) 대도시 지역 간에서만 이사를 한 사람 (4) 대도시와 기타 지역을 오가며 이사한 사람을 구분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에서 기타지역으로 이 사한 사람과 기타지역에서 대도시로 이사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4)번 항목으로 같

이 분류했다. 우선 2회 이상 이사한 사람 중, 개별 회차마다 상이한 방향으로 이사한 사람들을 둘 중 한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이질적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을 모두 합산해도 총 365명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2.97% 밖에 되지 않아 이 집단을 더 세밀하게 나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통제변수로는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 SES)로 일컬어지는 변수들을 활용했다. 가구소득, 성별, 연령, 고용상태, 학력, 결혼상태, 가구원수, 종교유무, 장애여부, 거주지역을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내용을 <표 2>에 정리했다.

3. 가설 검증 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보통’ 그리고 ‘만족’으로 분류했다. 이에 대해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만족’을 기준으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서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감소할 승산을 분석하고, 어떤 요인들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봤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보통, 만족)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남*, 여); 연령 (2015년 기준 만 나이); 1인당 가구소득 (가구원 당 가구 가처분소득) 고용상태 (피고용자, 고용주·자영업,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학력(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이상); 결혼상태(기혼·동거, 이별·사별·별거, 미혼*) 가구원수 종교 (유, 무*) 장애 (유, 무*) 거주지역 (대도시, 기타*);
이사 경험	유 = 최근 3년 간 이사했다고 응답 AND/OR 주소지 변경 있음 무* = 최근 3년 간 이사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 AND 주소지 변경 없음
이사 방향	무* = 이사 경험이 없음 기타-기타 = 대도시가 아닌 지역 간 이사 대도시-대도시 = 대도시 지역 간 이사 혼합 = 대도시와 기타 지역을 오가며 이사

* 준거집단

우선 이사 경험의 유무에 관련된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이사 경험의 유무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두 번째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같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이사 경험과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해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이사 방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IV. 분석결과

1. 분석 대상의 일반적 특징

분석 대상인 12285명의 인구학적 특징은 <표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분석 대상의 인구학적 특징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160	42.00	연령대	20대 이하	1056	8.60
	여성	7125	58.00		30대	1490	12.13
결혼상태	기혼	7802	63.51		40대	2096	17.06
	이별·사별·별거	2730	22.22		50대	1961	15.96
	미혼·미성년	1753	14.27		60대	1942	15.81
가구소득	일반	8205	66.79	종교	70대 이상	3740	30.44
	저소득층	4080	33.21		유	6041	49.17
고용상태	피고용자	5148	41.90		무	6244	50.83
	자영업	1776	14.46	장애	비장애인	11018	89.69
	무직	5361	43.64		장애인	1267	10.31
교육수준	초졸 이하	3791	30.86	거주지역	대도시	5204	42.36
	중학교	1501	12.22		기타	7081	57.64
	고등학교	3404	27.71	가구원수	1	2003	16.30
	전문대	1180	9.61		2	3892	31.68
	대학교	2143	17.44		3-4	5181	42.17
	대학원	266	2.17		5이상	1209	9.84
	이상						

분석 대상의 이사 경험과 관련된 특성은 <표 4>에 요약되어 있다.

<표 4> 분석대상의 이사경험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이사 경험	없음	9463	77.03
	있음 (응답 O, 주소지 변화 O)	2511	20.44
	있음 (응답 X, 주소지 변화 O)	317	2.58
	있음 (합계)	2828	23.02
이사 방향	없음	9457	76.98
	기타-기타	1369	11.14
	대도시-대도시	1094	8.91
	혼합 (기타-대도시, 대도시-기타)	365	2.97

분석 대상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회적 관계 만족도

원범주	빈도	퍼센트	사용변수	빈도	퍼센트
매우 불만족	31	0.25	불만족	538	4.38
대체로 불만족	507	4.13			
그저 그렇다	2757	22.44	보통	2757	22.44
대체로 만족	8473	68.97	만족	8990	73.18
매우 만족	517	4.21			

2. 이사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첫 번째 가설,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만족’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사 경험의 유무에 따라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을 확인했다. 이사 경험 변수의 준거집단은 ‘이사 경험 없음’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가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이사 경험의 효과를 축소시킬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회귀 모형에 거주지역과 이사경험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을 실행했다. 두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6>에 나와있다.

우선 첫 번째 모형에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더 높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높아지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은 낮아진다.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는 둘 다

무직인 사람보다는 ‘만족’에 비해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더 낮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졸 이상, 중졸 이하인 사람은 대졸자보다 ‘불만족’에 속할 승산이 높고, 고졸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은 대졸자에 비해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높다.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는 ‘불만족’에 속할 승산이 낮으며, 어떤 유형이든 결혼 경험이 있는 사람(기혼, 이별, 사별, 별거)은 미혼자에 비해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낮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낮다. 장애인인 비장애인보다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유의미하게 높다. 마지막으로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대도시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보다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유의미하게 높다.

〈표 6〉 모형 1 & 2 - 이사경험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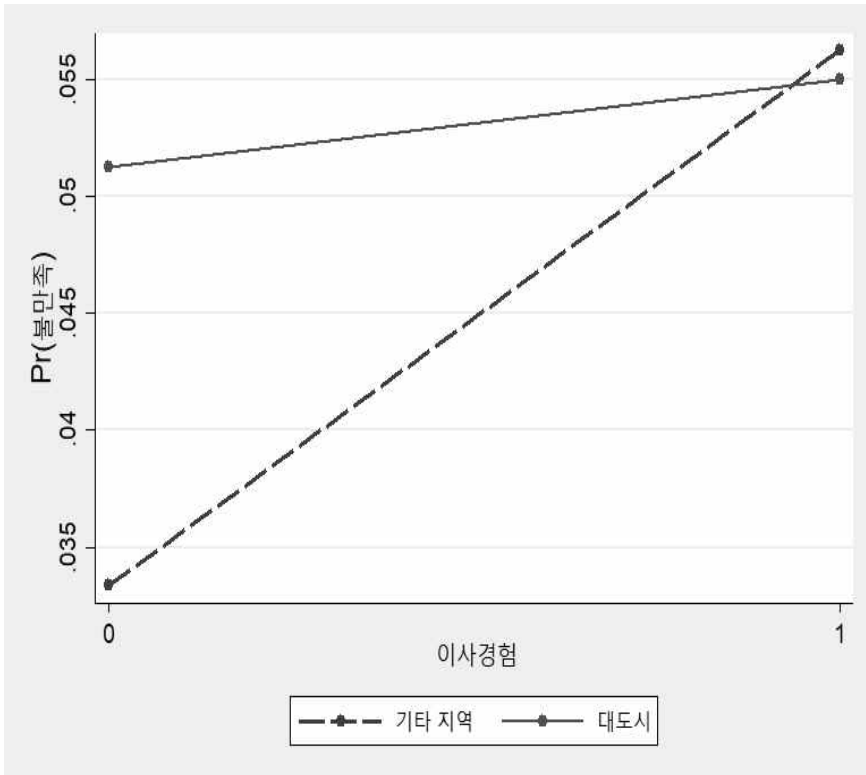
변수	모형 1		모형 2	
	불만족/만족	보통/만족	불만족/만족	보통/만족
	B	B	B	B
여성	.645 ***	.196 ***	.643 ***	.196 ***
연령	-.000	.009 ***	-.000	.009 ***
1인당 가구소득	-.001 ***	-.000 ***	-.001 ***	-.000 ***
피고용자	-.756 ***	-.407 ***	-.754 ***	-.405 ***
자영업자	-1.402 ***	-.710 ***	-1.384 ***	-.705 ***
초졸이하	.386	.463 ***	.390 *	.465 ***
중졸	.658 **	.550 ***	.643 **	.547 ***
고졸	.294	.432 ***	.285	.430 ***
전문대졸	-.403	.131	-.407	.128
대학원이상	-.477	-.328	-.497 *	-.335
기혼	-.937 ***	-.775 ***	-.952 ***	-.777 ***
이별·사별·별거	-.295	-.462 ***	-.299	-.460 ***
가구원수	-.042	.039	-.040	.039
종교	-.141	-.186 ***	-.152	-.188 ***
장애	.865 ***	.286 ***	.876 ***	.289 ***
대도시	.403 ***	.177 ***	.541 ***	.221 ***
이사 경험	.373 **	.136 *	.645 ***	.221 **
대도시*이사 경험			-.556 **	-.191
절편	-1.618 ***	-.937 ***	3.75 ***	.000
로그 우도	-7996.0284		-7991.793	
유의 확률	.000		.000	
N	12285		12285	

*p<.05, **p<.01, ***p<.001

독립변수인 이사 경험의 경우, 최근 3년간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보다 ‘불만족’에 속할 승산, 그리고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된다.

두 번째 모형의 경우 개별 통제변수들의 효과 및 유의성은 첫 번째 모형과 대동소이하다. 이사 경험도 첫 번째 모형과 같이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을 유의미하게 높이며, 거주지역 변수도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불만족’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높아진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만족’에 비해 ‘보통’에 속할 승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불만족’에 속할 승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검출됐다. 이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불만족’에 속할 확률에 대한 이사 경험과 거주지역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해보았다([그림 1]).

[그림 1] 거주지역과 이사경험의 상호작용 효과



거주지역이 동일한 사람들 간에는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불만족’에 속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 간에는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불만족’에 속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간에는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불만족’에 속할 확률이 낮다. 즉, 이사 경험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불만족’에 속할 확률을 높이지만,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효과가 축소되어 나타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가설,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것은 이사 경험의 효과를 축소시킬 것이다”도 지지할 수 있다.

3. 이사 방향에 대한 분석결과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사 방향을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사 방향은 주소지의 변동을 기준으로 ‘없음(이사 경험 무)’, ‘대도시-대도시’, ‘기타-기타’, ‘혼합’으로 분류됐다. 이사 방향에서 준거집단은 빈도가 가장 높은 ‘없음’으로 설정됐다.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도시 지역 내에서만 이사한 사람들은 준거집단인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대도시와 기타 지역을 오가며 이사한 사람들은 ‘만족’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유의미하게 높다. 특이하게도 기타 지역 간에서만 이사한 사람들은 ‘불만족’에 속할 승산과 ‘보통’에 속할 승산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다. 이 결과로는 세 번째 가설을 지지하기가 어려워 이사 방향이 ‘혼합’인 사람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해 추가분석을 실시했다. 이 경우 ‘없음’과 ‘대도시-대도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혼합’형 이사 방향을 지닌 사람들보다 ‘보통’에 속할 승산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기타-기타’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¹⁾. 또한 ‘불만족’에 속할 승산에는 어떤 유의미한 효과도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세 번째 가설은 본 연구결과로 지지할 수가 없다.

1) 없음: B = -.322 (p = .017) / 도시-도시: B = -.341 (p = .028) / 기타-기타: B = -.110 (p = .464)

<표 7> 모형 3 - 이사방향이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불만족/만족	보통/만족
변수	B	B
여성	-.643 ***	.197 ***
연령	-.000	.009 ***
인당 가구소득	-.001 ***	-.000 ***
피고용자	-.757 ***	-.405 ***
자영업자	-1.390 ***	-.704 ***
초졸이하	.385	.472 ***
중졸	.644 **	.555 ***
고졸	.286	.436 ***
전문대졸	-.406	.131
대학원이상	-.484	-.334
기혼	-.946 ***	-.778 ***
이별·사별·별거	-.296	-.460 ***
가구원수	-.041	.041
종교	-.149	-.185 ***
장애	.872 ***	.289 ***
대도시	.520 ***	.223 ***
기타-기타	.638 ***	.212 **
대도시-대도시	.107	-.019
혼합*	.311	.322 *
절편	-1.67 ***	-.970 ***
로그 우도	-7990.6605	
유의확률	.000	
N	12285	

*p<.05, **p<.01, ***p<.001

V. 결론

이 연구는 이사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 경험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거나 그저 그렇다고 응답할 확률이 더 높다. 또한 거주지역이 대도시일 경우 이사 경험이 사회적 관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특히 불만족에 속할 확률이 낮아진다. 한편 이사한 사람들 중에 출신지와 목적지가 이질적인 사람,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기타 지역 간에서만 이사한

사람은 사회관계에 만족할 확률이 이사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유의미하게 낮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으로 대도시의 조절 효과를 꼽을 수가 있다. 대도시라는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이주로 인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은 대도시보다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확인했듯이 ‘이방인의 공간’으로서 대도시가 지닌 특성들이 이주민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는 차갑고 고독한 공간으로 상상됐던 대도시가 개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특히 사회적 관계 기반이 없는 이주민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가혹한 공간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만으로는 조절 효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조절 효과가 발생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대도시가 ‘이방인’에게 비교적 친화적인 공간임을 지적해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듯이 ‘시골’이라는 지역이 ‘이방인’에게 특별히 더 배타적인 공간임을 밝혀주는 연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타 지역 간의 이사가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 결과는 기타 지역 간에서 이사할 경우 기존 인적 관계의 단절이 강하게 경험되거나, 기타 지역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더 강력한 것임을 암시한다. 귀농과 관련된 연구들은 귀농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부정적 태도가 높으며(박대식, 2016), 지역 모임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존 농민들의 텃세가 귀농인의 지역사회참여를 저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박대식·남승희, 2015). 물론, 본 연구에서 검증된 조절 효과는 대도시의 ‘이방인’ 친화적 성격과 시골의 ‘이방인’ 배타적 성격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조절 효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거주지 별로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겪게 되는 개인적 경험, 특히 각 공간에서 경험한 배제 및 환대와 관한 변수들을 활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작업을 통해서 비로소 조절 효과가 정확히 어떤 기제를 통해 발현되는 것인지, 그리고 대도시라는 공간이 정말로 ‘이방인’에게 친화적인지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더 존재한다. 우선 이사 거리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근의 인구이동 동향 연구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구이동은 대부분 인접한 지역, 즉 같은 구 아니면 인접한 구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민보경·변미리, 2017). 만일 비슷한 경향이 다른 대도시에서도 관찰된다면, 대도시에서 경험되는 대다수의 이사는 출신지에서 축적한 사회적 관계와의 물리적 분리를 들은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근접지역에서 이사해온 사람들은 새로운 ‘자연적

태도'에 접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대도시 간의 이주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지 않고, 대도시라는 지역이 조절 효과를 갖게 되는 것 역시 대도시라는 공간의 특성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유형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응답자들의 구체적인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이사 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더욱 적합한 자료가 있다면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정밀하게 조절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사 경험을 최근 3년으로 한정하여 사용했는데, 이사한 뒤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사 경험의 부정적 효과가 극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Nowok et al, 2013)을 고려한다면 더 긴 기간의 이사 경험을 다뤘을 경우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실시한 모든 차수의 자료를 활용해서 이사하기 전과 후, 그리고 이사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계열 분석을 통해 밝힐 수 있다면, 국내 이주 경험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완성도가 높은 이론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이사 경험이 거주지역과 별개의 변수로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 결과는 기존에 우리가 도시주민으로서 느꼈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불만과 회의감은 일정 부분 우리 모두가 이방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며(김광기, 2011), 한국의 이주학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바로 외국출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한국출신 선주민들이 대도시에서 느끼는 고독 간에 '이방인'이라는 다리를 놓아 공감의 공간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창원에서, 서산에서, 정선에서 대도시로 올라올 때 느끼는 외로움을 상기해보면, 그리고 그 외로움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데서 오는 진통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공감의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참고문헌

- 김광기. 2007. “이방인의 현상학.” 《현상학과 현대철학》 33: 41-67.
 _____. 2011. “근대성, 현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회이론》 39: 275-302.
 김은정. 2012. “여성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계만족도.” 《한국사회과학연구》

- 31(1): 125-146.
- 마상진. 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 민보경·변미리. 2013.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서울도시연구》 18(4): 85-102.
- 박정미. 2017. “ ‘무작정 상경’ - 서울 이주자에 관한 담론과 젠더.” 《사회와 역사》 113: 311-344.
- 박대식. 2016.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주민의 태도 영향요인 분석.” 《농촌사회》 26(1): 7-35.
- _____. 남승희. 2015.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참여 실태와 관련 요인.” 《농촌사회》 25(1): 41-87.
- _____.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 박순희·조원탁.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비교: 이주여성과 일반여성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2): 41-57.
- 안윤정·임운서. 2018.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2): 273-300.
- 임동근·김종배. 2015. “새마을운동에서 마을만들기까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반비. pp.381-410.
- 임운서·안윤정. 2017. “서울에서 지방출신 여대생으로 살아가기.” 《아시아여성연구》 56(2): 205-256.
- 정형호. 2011. “20세기 서울 지역 도시공동체의 특징과 변모 양상.” 《실천민속학연구》 17: 285-320.
- 차원규. 2012.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도시와 농촌의 생활만족도 분석.” 서울대학교.
- Tonnies, Ferdinand. 2017.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Gemeinschaft und Gesellschaft* Ferdinand Tonnies. 곽노완·황기우 역. 서울: 라움(원전은 1912년 출판).
- 한국복지패널. 2018. 《한국복지패널조사 1~12차 결합데이터》
- Allport, Gordon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N.Y.: Doubleday.
- Ackerman, Norleen and Beatrice Paolucci. 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equacy: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Duneier, Mitchell. 1999. *Sidewalk*.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 Fu, Zhaohao and Linxin Hao. 2017. “Agent-Based Modeling of China’s Rural-Urban Migration and Social Network Structure.” *Physica A* 490: 1061-1075.
- Gans, Herbert J. 1991. “Urbanism and Suburbanism as Ways of Life: A Reevaluation of

- Definitions.” pp. 170-195 in *Metropolis: Center and Symbol of Our Times*, edited by Philip Kasinitz.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inde, Robert A. 1979. *Towards Understanding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 Nash, Catherine. J. and Andrew Gorman-Murray. 2017. “Sexualities, subjectivities and urban spaces: a case for assemblage thinking.” *Gender, Place & Culture* 24(11): 1521-1529.
- Nowok, Beata, Ham, Maarten van, Findlay Allan M., and Vernon Gayle. 2013. “Does migration make you happy? A longitudinal study of internal migr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Environment and Planning A* 45: 986-1002.
- Rodgers, Willard. 1980. “Residential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to Size of Pla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6-441.
- Said, Edward W. 1986. “Reflections on Exile.” *Granta* 13: 157-172.
- Schuessler, Karl. F. and Gene A. Fisher.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49.
- Schuetz, Alfred. 1944. “The Stranger: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9(6): 499-507.
- Simmel, Georg. 1971. “Metropolis and Mental Life” pp. 324-339 in *On Individuality and Social Forms*, edited by D. N. Levin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witek, Malgorzata. 2016. “Internal Migration and Life Satisfaction: Well-Being Paths of Young Adult Migra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5: 191-241.
- Waldinger, Roger. 2001. *Strangers at the Gates: New Immigrants in Urban Americ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1): 1-24.
- Zhong, Hua, Xu, Jianhua and Alex R. Piquero. 2017. “Internal Migration, Social Exclusion and Victimization: An Analysis of Chinese Rural-to-Urban Migra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54(4): 479-514.

(2019.06.12. 접수; 2019.06.28. 수정; 2019.06.29. 채택)

Lonely Strangers of Metropolis: The Effect of Internal Migration Experience 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Jiwon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is inspired by a simple question of whether the loneliness experienced by urban dwellers is real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urban space. It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fact that metropolises house high numbers of migrants from other regions. Migration into any new space necessarily entails a break from existing social relations. As a new destination, metropolis is often described as unstable and uncomfortable in comparison to the place of origin – yet this conclusion may be have resulted from an overly superficial examination of urban space. The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we have too easily accepted the explanation that urban spaces inherently deter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relationships. It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as a space of migrants and ‘strangers’, metropolis may even function as a friendlier environment for migrants, where they can more easily form social ties.

A se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were carried out with data from the 7th to 10th waves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to determine how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internal migration experience in the past three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ose who have engaged in internal migration have a lower probability of being satisfied with their social relationships, even when the effects of the place of residence have been controlled. Moreover, residence in a metropolis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and lowers the negative effect of internal migration on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People who have moved between metropolis and other regions, and those who have moved only between non-metropolitan areas, have lower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an those without migration experienc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metropolis may in fact be a less harsh environment for migrants.

Keywords: urban sociology, moving, internal migration, social relationship, urban life

Research Article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and Two Patterns of Governance in Korea and Japan

Byoungcha Lee *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and Japan. Korea has been experiencing multicultural reality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migrant workers, the return of ethnic Koreans from China, an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To cope with these demographic changes, the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has taken initiativ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However, the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has been less responsive to the need of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Instead,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actively implemented those polic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wo different patterns of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and Japan can be explained by two plausible factors such as historical experiences with ethnic minorities and different patterns of state-society relations. While Japan's localized pattern can provide immigrants with local-friendly and diverse programs, it might cause uneven and uncoordinated policies among the local government without national uniformity. Korea's nationalized pattern can maintain a uniformity of social services for immigrants.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might fail to be sensitive to the needs of local immigrant communities.

Keywords: Immigrants, Immigrants' integrati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Korea, Japan

*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University of Seoul. byoungcha@uos.ac.kr.

I. Introduction

As goods, capital, and information have been freely exchanged in a more inter-dependent world, human beings have kept moving across border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the number of migrant stock in the world is approximately 244 million, which accounts for 3.3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IOM, 2017). Although the number is still considered as a small proportion of the world's population, the geographical scale of them is becoming wider. Migrants are residing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but also in the new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Taiwan, South Korea, Singapore, Hong Kong, Malaysia and Thailan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come a global and universal phenomenon (Lee, 2009).

International migration as a global phenomenon entail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and particularly it raises several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how nation-states control borders, how they draw the boundary of membership, and how they should incorporate foreigners and immigrants into their host societies in order to maintain political and social orders. If nation-states failed to control borders, and to integrate immigrants into receiving societies, it would ignite social conflicts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Korea and Japan have responded to those questions by focusing on its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 contrast to the growing number of immigrants in Asia, immigration studies in general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Asian cases. Among little previous works, most literatures on immigration policy have so far concentrated on immigration control rather than immigrants' integration. Further, few comparative studies have focused on the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Asia.¹⁾ To overcome the dearth of academic attention and the poverty of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pa-

1) Takeyuki Tsuda's edited volume,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s a representative work to reflect this trend. Tsuda's volume is highly insightful for providing rich empirical researches on immigrants' integration at the local level, and aims for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including the cases of Italy, Spain, and Korea. However, it fails to fully interpret the case of Jap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Especially, the chapter on the Korean case does not sufficiently deal with integration policy toward immigrants in Korea.

per preliminarily examines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both in Korea and Japan.

This paper is composed of four parts. The first section overviews the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The second part discusses the Korean government's attempts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integration both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he third section briefly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cy (top-down) with comparison to the Japanese case (bottom-up). In conclusion, I tentatively assess each country's integration policies with regard to the roles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I. Multicultural Reality in Korea

Korea has long been regarded as an ethnically homogeneous country with few foreign populations. Such demographic homogeneity has been strengthened by strong ethnic nationalism and strict definition of nationhood based on the purity of blood, which has been reinforced by a series of nationalist momentums including the anti-Japanese independence movements, the military governments' nationalistic mobilization, and nationalistic democratic movements (Shin, 2006). Recently, however, Korea has been experiencing drastic demographic changes due to the influx of foreign migrant workers, the return of ethnic Koreans mostly from China, an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n males and international brides mostly from neighboring Asian countries.

The number of foreign population residing in Korea has been rapidly increasing. For example, the number of foreigners in 1980 was 40,519, and 49,500 in 1990. The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in 1990 was merely 0.11% of the total population in South Korea (Seol, 2008). However, the rate reached the level of about 4% in 2016. With comparison to other OECD countries, the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is still low. However, it is notable that the increase of foreign population is quite rapid, and considering Korea's ethnic homogeneity, the increase of foreign population will profoundly affect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Since the early 1990s, international marriages began to be paid attention in the

Korean society. While the number of total marriages in Korea has decreased by approximately 20%,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has increased rapidly by almost 10 times from 4,710 cases in 1990 to 43,121 in 2005. Since then, the number of marriages between Korean males and foreign females increased rapidly, and in 2005 it reached 13.6% of the total marriages in Korea. In 2010 international marriages accounted for 40% of the total marriages in Korea. Especially, in some rural areas, about 40% of marriages were international marriages (Kim, 2016). As a consequence,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consider the impacts of international marriages on an ethnically homogeneous society because the sudden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from the mid-1990s was associated with the influx of foreign women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who are more likely to settle down in Korea.

Immigration issues in Korea were caused by three driving forces such as the influx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ethnic Korean workers, and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is important that these trends will not end with temporary phenomena because Korea has a structurally embedded demand for continuous migration. The most critical problem is that Korea is one of the fastest aging societies in the world. Korea has already entered the group of ‘aging society,’ which means that 7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s composed of older people aged 65 and over in 2000.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which those 65 years old and over account for 14% of the population in 2020-2030 (Eun, 2008). The proportion of older people is expected to outnumber that of children aged 0-14 in 2020, and the percentage of those 65 years and over will rise to 38.2 % of the total population, more than four times that of children by 2050 (Eun, 2008).

Falling fertility rates contributed to the aging population in South Korea. As a developing country, South Korea tried to curb fertility rates after the 1950s. The Korean government was successful in implementing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the early 1960s. Since then, the total fertility rate remained at 2.1 in two decades. However, Korea’s fertility rate kept falling below the replacement level due to a higher age at marriage and an increase of costs in education and childcare. Especially the Asian Financial Crisis boosted the pace of the falling fer-

tility rate, and it reached 1.08 in 2005 (Eun, 2008).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falling fertility rate lead to the decline i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hen those aged 15-64 are presumed to be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ose people will reach 64 % in 2020, and then, the number is expected to fall as low as 53.7 % by 2050 (Kim, 2009).

To cope with this demographic problem, the expansive immigration policy could be one of the op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Many local governments have also introduced incentives for higher fertility rates including childbirth allowances, one-time payment of between one and three million won for every second or third newborn, gift certificates for families to buy clothes, diapers, baby food and other childcare supplies for newborns. However, these measures have failed to slow Korea's declining fertility rate. As a conseque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opening the door to potential immigrants to prevent harmful effects of the aging population.

III.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 Korea

1. Shifting focus from control to integration

When foreign migrant workers began to enter Korea for the first time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d not yet established a systematic immigration policy (Kim, 2008: 585). The government was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import of cheap labor forces for some of its industrial sectors, especially so-called 3D sectors, and with the prevention of pursuing permanent residency by those workers. In general, Korean immigration policy began with an emphasis on economic function by means of importation of cheap and low-skilled labor forces, and security function by adopting a highly restrictive principle including "no foreign settlement and no multicultural society" (Seol and Skrentny, 2004: 482). The Korean state assumed that a failure of controlling immigration and migrant settlement would increase potential social costs, and further dange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the Korean state admitted foreign workers on a temporary basis without allowing family reunification (Seol and Skrentny, 2009: 607). However, it hardly paid attention to the social consequences of importing foreign laborer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migrant workers' poor working conditions became a serious public concern, various NGOs that worked for migrant workers' rights were mobilized in order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improve social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and the labor-importing system (Kim, 2003). Responding to their demands for human rights, the government changed its immigration policy to be more open and inclusive. Furthermore, as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s and births of mix-raced children posed a more direct "multicultural" challenge to Korean society, the Roh Moo-hyun government began to pay attention to immigrant integration by announcing in 2006 that "Korea is moving toward multicultural society and that this trend is irreversible" (Yoon, 2008). Thus, many observe that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shifted from immigration control to immigrant integration. More specifically, since 2003,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riving a paradigm change in its immigration policy in terms of "multicultural policy" by encompassing within it such issues as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mixed raced people, migrant workers, and foreign residents in general. Since then, the Korean state has announced a series of policy actions and legislation to prepare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2. Major Policy Plans and Laws at the National Level

In 2006, the Committee on Foreigner Policy discussed extensively the "basic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ystem on foreigner policy (hereafter, the Basic Direction). The Basic Direction (Oegukinjeongchaek Gibonbanhyangkwa Choojinchekye) defines three principles of foreigners policy in Korea as follows; 1) protecting foreigners' human rights 2)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ttracting high-skilled foreign workers and importing low-skilled workers in a limited way 3) encouraging multicultural embracement and social integration. The

Korean government also proclaimed the “Grand Plan” of social integration of female marriage migrants, mixed-raced people and foreign residents into Korean society (Lee, 2008). The Grand Plan (Yeoseong Gyeolhoniminja Gajok Mit Honhyeolin/Ijuja Sahoetonghap Jiwonbanan) proclaims the vision of Korea as a leading country of multicultural and human rights in Asia. It mainly aims to reduce discrimination against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and mix-raced people, and to raise social awareness of multicultural issues. Following the Grand Plan, 21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s Support Center were established nationwide. The name was changed into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ater. The centers mainly focus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s for vocation training, and counseling for family related issues. The major policies within the Grand Plan are summarized in the Table 1.

<Table 1> Major Policies of the Grand Plan of April 26, 2006

Major Policies	Management	Cooperation
1.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and protection of foreign wives before entry to Korea		
1-(1) Control of illegal process by marriage agencies	MJ	NPA
1-(2) Legislation to regulate marriage agencies	MSWH	
1-(3) Regulation of trafficking in international marriages	MJ	MFAT, MGEF, NPA
1-(4) Standardization of marriage visa and process	MJ	NFAT
1-(5) Establish national cooperation system	MFAT	
1-(6)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foreign wives	MGEF	MSWH, MFAT
2.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2-(1) Make it difficult for Korean husband to withdraw identification guarantees for his foreign wife	MJ	
2-(2) Make it easy for foreign wives to prove their grounds for divorce (e.g. domestic violence)	MJ	
2-(3) Simplifying the application process for Korean citizenship for divorce foreign wives who have legitimate reasons for divorce	MJ	
2-(4) Offering Korean citizenship or denizenship to children and their mother of unregistered international marriages abroad	MJ	
2-(5)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MGEF	MJ
3. Support and orientation for newly arrived foreign wives		
3-(1)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newly arrived foreign wives	MGEF	MJ, MGAHA, MIC, Local govt.

Major Policies	Management	Cooperation
3-(2) Support for adaptation and settlement	MGEF	MCT, MEHRD, MAF
4. Support for Children of international marriages in schools		
4-(1) Establishing multicultural education and give support to children experiencing prejudice	MEHRD	
4-(2) Offering welfare and counseling services	MSWH	MEHRD
5. Providing social welfare to foreign wives		
5-(1) Support to meet minimum living costs and health care	MSWH	MGEF
5-(2) Support for child care	MSWH	MGEF, AF
5-(3) Providing job information	ML	
6. Raising social awareness of multicultural issues		
6-(1) Publicizing governmental policies	MGEF, MJ	
6-(2) Promoting a pro-multicultural environment	MCT	MEHRD, MGAHA, Local govt.
6-(3) Educating civic servants on multicultural issues	CSC, MGEF, MJ	All admin. Local govt.
6-(4) Educating social welfare and health care personnel	MSWH, MGAHA, MEHRD, MAF	
7. Making a comprehensive project		
7-(1) Conducting surveys of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and children	MGEF	GAHA, MEHRD
7-(2) Build more centers to support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MGEF	Local govt.
7-(3) Providing translation, counseling, education, and voluntary services	MGEF, MSWH	
7-(4) Build a network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GEF	

Notes: Abbreviations

CSC: Civil Service Commission

MAF: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C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EHRD: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GAHA: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C: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J: Ministry of Justice

ML: Ministry of Labor

MSWH: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Health

NPA: National Police Agency

Source: Presidential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2006); Requoted from Seol (2008)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Basic Law Pertaining to Foreigners in Korea (Jaehan Oegukin Gibonbeop)” (hereafter Basic Law), which provid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support foreigners and enhances foreigners’ rights in Korea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Upon legislation of the Basic Law, the Korean Immigration Bureau extended their policy areas to the implementation of foreigner policy in addition to its original task of controlling entry and exit. At the same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ill strive to enhance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ers into Korean society with full respect of their rights. Following this law,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Damunhwa Gajeong Jiwonbeop)” in September 2008. This legislation aims to help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enhance their quality of living, and to offer information and support plans to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 survey is conducted every three years to scrutinize a social condition in front of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seems to follow the basic principles of the Korean immigration policy which was set up by the previous Roh Moo-hyun government. For example, the First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08-2012) which wa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8 specifies the basic direction of immigration policy as follows: 1)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n open-door policy, 2) Developing into a more mature, multicultural society where human rights are respected, 3) Ensuring that immigration laws and orders are respected.

The Korean government has just finished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3-2017). The Second Basic Plan inherited the basic policy direction from the past. However, the new policy goal, “Co-Prospe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added and it approaches immigr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Second Basic Plan also contained the major policy tasks targeti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in the category of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at Respects Shared Korean Values.” The major policies and action plans are summarized in the Table 2.

<Table 2>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3-2017):
Helping Immigrants Through Marriage Get Settled

Tasks	Ministry in Charge
1. Promote Social Integration that Respects Shared Korean Values	
1.1 Refine the Nationality & Immigration System in the Interest of Self-reliance and Social Integration	
(a) Tighten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MOJ
(b) Closely link the citizenship application process with the Korean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MOJ
(c) Offer better services to citizenship applicants	MOJ
1.2. Operate a Well-organized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a) Develop and manage the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according to individual immigrant status	MOJ
(b) Expand the infrastructure for the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MOJ, MCST
(c) Establish a comprehensive operating system for the Korea Immigration Integration Program	MOJ
1.3. Prevent Fake Marriages and Support the Settlement of Immigrant Spouses	
(a) Tighten visa screening and monitor marriage agencies closely	MOJ, MGEF
(b) Support immigrant spouses in the initial settling stage	MOJ, MGEF
(c) Empower immigrant spouses with financial independence	MEL, MGEF, MCST, MFAFF
1.4. Promote Foreign Investmen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 Assist initial adjustment of children with a foreign background	MEST, MCST, MOJ
(b) Offer better career services for youth with a foreign background	MGEF, MCST, MOEL, MEST
(c) Establish multiculture-friendly educational environment	MEST,
1.5. Increase Infrastructure and Finances for Social Integration	
(a) Secure finances for social integration	MOJ
(b) Expand the foundation for immigrant participation in society	MOJ
(c) Support foreigner settlement as local residents	MPAS, MOJ

Notes: Abbreviations

MSF: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ES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MFA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MPA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Security

MOJ: Ministry of Justice

MFAFF: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

ME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GE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ource: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2012)

3. Top-down Approach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taken initiatives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As mentioned above, the President directly ordered the ministries to make plans for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s a resul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major plans and legislations including the Basic Law, the Grand Plan an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However, the local governments did not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policy-making process. In 2012 80% of local governments' budget for immigrant integration was spent for co-project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urther, most local governments just followed the guidelin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For example,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proposed "Standard Ordinance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delivered it to local governments in February, 2007. Following this standardized form, as of May, 2008, 63%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nacted the ordinance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Yang, 2009). Although some migrant NGOs and lawyers criticized that this standard ordinance excludes undocumented foreigners and prevented local governments from making their own ordinances that fit more into local conditions, most local governments accepted this ordinance form without revisions. This top-down process in making ordinance for foreign resident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actively initiates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are passive in dealing with the issue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with foreigners.

The Ordinance for Supporting Foreigners indicates that any resident foreigner may use the properties and public facilities equally to the other residents unless it is limited by law, and they are entitled to receive various administrative benefits. It also state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support for foreigner to settle in early time to the local community, and undertake appropriate action for building up the condition for resident foreigners to live with the local residents. The scope of support is 1)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and basic living adaptation 2) con-

sultation on difficulty, living, legal affairs, employment and others 3) providing living convenience and emergency relief 4) hosting cultural and sports event for resident foreigners. The Ordinance indicates that local government may establish advisory committee for supporting the policies.

The Ordinance allows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NGOs that support foreign residents with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ince most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not been specialized in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they tend to support foreign residents with corporation with NGO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rmer the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s of July, 2009, 743 public agencies and civic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these activities. Compared to the year of 2008, the number increased by 179 (31.7%). Among them, the number of civic organizations including religious organizations is 439. However, considering many public agencies such 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nd Migrant Workers Center are run by NGOs, the proportion of civic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be higher. As local governments began to provide financial supports and to subsidize immigrants supporting policies, immigrant integrations become attractive and lucrative issues for local NGOs. Hye-Soon Kim reports that some local NGOs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o receive more money from local government (Kim, 2008).

In principle, while national government provides the basic guideline, local governments need to plan and implement more detailed programs that fit into specific local conditions. However, local governments in Korea do not offer specialized and creative services for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Although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have a variety of ethnicity and nationality, most local governments are running almost the same activiti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It shows the limitations of top-down approach in mak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nd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not yet prepared for a long-term investment on immigrants integration.

IV. Immigrants' Integration Policy in Japan: Bottom-up approach

While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initiative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the Japanese central government has been less responsive to the need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ward immigrants. Instead,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actively established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However, the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has begun to consider the need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Responding to the progress i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t the local level,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AC) formed the Committee for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y Building in June 2005 (Yamawaki, 2008). After researching a variety of policy measures from local governments, the Committee submitted the report, "the Plan for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in March 2006. Although the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has discussed the issues of immigration, it has mainly focused on policy related to foreign workers as temporary working forces, controlling foreigners after their entry, preventing foreign crimes, and so on (Yang, 2009). Until recently, the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felt no need of long-term consideration i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this sense, "This report is supposed to be the cornerstone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Abe, 2007).

This plan is composed of the four major focuses on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including 1) communication assistance; 2) lifestyle assistance; 3) community building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4) establishment of a system to promote multicultural coexistence. The plan recommend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provide foreign residents with multilingual information about administrative services and local information. The plan also indicates that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offer programs for Japanese language and Japanese society. For lifestyle assistance, the plan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foreign residents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everyday life such as garbage collection, housing, education, labor environment, health care, and emergency assistance. The plan acknowledges that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mong local residents is an important precondition for facilitating communication assistance as well as lifestyle assistance. Therefore, the plan recommends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programs that raise multicultural awareness among local residents such as education of foreign languages, and events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foreign and local residents. The plan also considers how to help foreign residents form their own community network, and how to increase foreign resident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Finally, the plan specifies each role of local government, national government, private sectors for a better systemized coordination among them.

Although the plan “requested that all prefectures and major cities create guideline or plans for the promotion of multicultural community building” (Yamawaki, 2008), legal responses from local governments seem to be slow. In July 2007, Miyagi prefecture became the first one in the country that made an ordinance to promote multicultural coexistence (Yamawaki, 2008). Comparing the ordinances at the local level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Yang assesses while the Korean version contains more detailed clauses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the Japanese ordinance seems to be more declarative by emphasizing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Yang, 2009).

While legal foundation for immigrant integration in Korea is more developed than one in Japan, in practice, efforts of social integration for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at the local level are much more diverse. Local governments in Japan as major actors who implement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have established a variety of multicultural practices including “language classes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personal, legal,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issues), public housing, health insurance and emergency medical coverage, assistance with alien registration, and even limited political representation through foreigner advisory councils” (Tsuda, 2006).

In her study of local incorporation programs in the six cities including Yokohama, Osaka, Nagoya, Sapporo, Kobe, and Kyoto, Pak notes that the contents of the incorporation programs are common: 1) initiatives mitigating language barriers; 2) other incorporation policies; 3) cultural outreach through nonprofit

foundations dedicated to internationalization; 4) research and continuing debates on the appropriate scope of incorporation initiatives; 5) advocacy for reforms at the national level; 6) creation of alternative form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ak, 2006). All six cities provide not only Japanese language classes, but also “translate information about local governmental services and other aspects of daily life in their cities into a total of fifteen different languages” (Pak, 2006: 73). All cities are active in direct financial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school-age education programs. Since education of non-Japanese children is one of urgent tasks, some local governments actively hired special Japanese language teachers for foreign children, and provide intensified counseling services for foreign children. In Kobe, Multicultural Children's Center provides support staff to help individual children adjust to Japanese schools. For the activities for cultural outreach, international center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coordinat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plan at the local level. International centers take part not only in mitigating language barriers, but also in promoting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mong Japanese residents throughout overseas study trips and social events with foreign residents.

Among those activities, the foreigners' assembly that “have set up in Tokyo (1997), Kanagawa (1998), and Hyogo (1999) prefectures, and in the cities of Osaka (1994), Kawasaki (1996), Kyoto (1998), and Hamamatsu (2000)” (Han, 2004), have drawn attention. While the council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is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and Korean experts, the foreigners' assembly in Japan is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form for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foreign residents. Although the foreigners' assembly with the status of ‘consultative councils’ (*shingikai*) has no political and judicial power, in reality, their activities have a profound impact on decision-making process through several propositions. In Kawasaki city, a variety of propositions are presen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issues of “the education of children, discrimination in daily life,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formation center, as well as supporting inbound internationalization (1997), pursuing multicultural understanding (1999), expanding public welfare service for senior foreign citizens (2000), sup-

porting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01), and maintaining an environment for encourag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2003)” (Kwak, 2009: 173). Combined with efforts of “reform-minded ‘social bureaucrats’” (Han, 2004) in Kawasaki city, the foreigners’ assembly functions as partne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lthough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ve paid attention to providing various measures to serve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focusing in communication, lifestyle assistanc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so on, their policies are insufficient in providing road to citizenship and to political rights. Fundamentally, Tessa Morris-Suzuki criticizes the current policy by using the term, ‘cosmetic multiculturalism’ (Morris-Suzuki, 2002). She uses the term ‘cosmetic multiculturalism’ “to suggest a vision of national identity in which diversity is celebrated, but only under certain tightly circumscribed conditions” (Morris-Suzuki, 2002: 171). Since tabunka kyosei policy does not request Japan to change existing institutions structurally and fundamentally, it is cosmetic, and cultural diversity is to be displayed in a sort of controllable form. Kwak also warns that multicultural coexistence without principle might bring about “unexpected, retrogressive outcomes when the public supports any decision unfavorable for multicultural coexistence” (Kwak, 2009: 178).

V. For a comparative study

Responding to the demographic change,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taken initiatives in implement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since 2006. The development of the policies has been first made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n the national government has pushed local governments to prepare for multicultural society. It can be characterized as top-down approach (from central to local government). However, Japan already has experienced problems of ethnic minorities, especially zainichi Koreans after the World War II. After the revision of Immigration Control Act in 1990, the Japanese descendants from Latin America

became a newly emerging ethnic minority.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Japan have been developed in response to demands by Korean residents at the local level. Some local governments had established programs to serve foreign residents, and then they pushed the national government to implement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ward foreign residents at the national level. For example, the Committee for Localities with a Concentrated Foreign Population which is composed of sixteen cities calls upon "national authorities to reform public education,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foreigners' registration system to better meet the needs of their foreign residents" (Pak, 2006: 68). Therefore, the Japanese case can be characterized as bottom-up approach (from local to central government).

In this part, I attempt to explain what factors have made different pattern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both countries. For a preliminary explanation, I take into account of two plausible factors: 1) historical experiences with ethnic minorities; 2) different pattern of state-society relations.

1. Historical Experiences with Ethnic Minorities

Korea has historically been described as a racially homogenous country without much experiences of living together with foreigners. There have been only two visible foreigners' groups in South Korea until recently. The first group is the U.S soldiers and their families who began to live in South Korea mostly after the Korean War. However, since they mostly spent their time inside the U.S. military camps, their encounter with the native Koreans was quite rare. The second foreign group is Hwakyos, which means the Chinese citizens residing outside of China. Due to their personal networks to China, Hwakyos used to dominate export and import in Korea right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in 1945. Yet, the number of Hwakyos in Korea has decreased because of soci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harsh regulation on their properties and economic activities in the 1960s and the 1970s. Therefore, Korea did not face a variety of issues on immigration control and immigrants' integration until foreign workers from Asian countries began to enter Korea in the late 1980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between Korean males and Asian females suddenly increased since the early 1990s. The problems related to immigration are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yet the issues of immigration have profoundly had impacts on Korean society.

Different from the Korean case, Japan has been concerned about dealing with foreign minorities, especially the former colonial subjects. Dealing with the former colonial subjects in the newly democratized Japan deeply affected the formation of Japan's national migration regime. Pak argues that the decision about how to manage Koreans and Taiwanese was closely connected with Japanese conservatives' concerns about how to redefine Japan's national identity from a multi-ethnic empire to democratic nation-state (Pak, 2004). Those 'old-comers' moved to Japan as a part of the wartime mobilization. In 1910, the number of the Korean populations in Japan was only 791, but it surpassed 129,000 in 1925, and reached about two million when the Pacific War ended. One study said "Over 720,000 Koreans were forced to move to Japan as manual and menial laborers from 1939 to 1945 alone" (Morooka, 2006: 38). After Japan was defeated in 1945, more than 1.5 million Koreans came back to Korea. However, about 50,000 Korean decided to stay in Japan "in part because of the political uncertainty and high inflation in their homeland an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repatriating the property then had accumulated" (Komai, 1995: 234). Due to the 1952 San Francisco Peace Treaty, however, Japan stripped the former colonial subjects of their Japanese citizenship. Therefore, those old-comers were considered as foreigners instead of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Their life is characterized by "marginalization and the struggle for inclusion" (Chapman, 2006: 90). Unlike the Japanese national government which did not have the concept of social integration toward foreign residents, some local governments has made gradual progress in mak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toward foreigners, especially resident Koreans. Yamawaki argues that some local governments in the Kansai region, where there are a lot of Korean residents, began to recognize the necessity of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t the local level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o enhance equality of Korean residents (Yamawaki, 2008). Those local governments regarded resident Koreans as integral parts of their communities. Resident Koreans and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im-

prove their rights contributed to local initiated pattern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in Japan.

In sum, while Korea had been historically free from the problems of foreign minorities, Japan has faced the issues of the old-comers as a legacy of the Japanese colonialism, and witnessed resident Koreans' struggles against legal and social exclusion and attempts at assimilation. In this sense, the problems of the old-comers in Japan have functioned as a barrier to implement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ctively at the national level.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in Japan had to be major agents in establishing and practicing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given the lack of multicultural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In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has never historically considered foreign residents as groups who disrupt social order in Korea. Thus, the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was able to take initiatives in making immigrants' integration policies.

2. Different Pattern of State-Society Relations

Different state-society relations in both countries might result in different patterns of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Put simply, political activism in Korea has had a greater impact on national policy-making than in Japan. This consequence stems from the different structure of civil society in each country. The Japanese civil society is characterized as an abundance of small local groups with many members but a striking dearth of large independent advocacy groups with political influence, so it can be called as "members without advocacy" (Pekkanen, 2006). Unlike the Japanese civil society, the Korean equivalent can be categorized as "advocacy without members," which means that the civil society group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drawing policy changes rather than to mobilizing their membership bases. To exert their influences, the Korean NGOs usually aim for policy changes by targeting the national government, but activities of NGOs in Japan have become localized.

In terms of a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civil society in Japan, Robert Pekkanen claims that the Japanese state decided to selectively shape civil society by giving

more preferential treatments to certain type of organizations, while regulating other type. The Japanese state has promoted small local associations such as the neighborhood associations, and the state has put heavy institutional restrictions on large national advocacy groups. As a consequence, the Japanese civil society has a dual structure such as “an abundance of small local groups but a striking dearth of large independent advocacy groups” (Pekkanen, 2006). It implies that many small local groups facilitate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but fewer civil society voices are heard in the terrain of public policy. The dearth of voices from civil society in the area of immigration policy also made a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Japan. Pekkanen states, “Japanese civil society groups have also been weak on issues ranging from whaling to human rights” (Pekkanen, 2006).

Unlike the Japanese NGOs, the Korean civil society can be categorized as “advocacy without members,” which means that the civil society groups have paid more attention to drawing policy changes rather than to mobilizing their membership bases. To exert their influences, the Korean NGOs usually aim for policy changes by targeting the national government, and have developed strategies to make solidarities with other civil society groups, and they are really good at obtaining media attentions. The Korean NGOs have also been a partner in national governance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Furth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whose title was “participatory government,” intensified the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because the birth of the Roh Administration was made possible by increasing power of civil society groups. It is obvious that the active coalition-building on the consensus of human rights delivered more liberal policy in Korea in comparison to Japan.

Although there is a debate on the nature of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state-led or civil-society led) (Yoon, 2008), it is undeniable that civic organizations first publicized the multicultural issues, and then they requested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to take actions. In reality, many NGO activists and migration scholars participated in formulating the policies, and many NGOs became major agencies that carry out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VI. Conclusion

I make a conclusion by evaluating localized integration policies in Japan and nationalized one in Korea. The Japanes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can quickly respond to what immigrants need, and provide immigrants with local-friendly and diverse programs. In other words, "municipally-initiated multicultural policies are more likely to be sensitive to the idiosyncratic needs of the local communities" (Kwak, 2009: 182). As Tsuda points out (Tsuda, 2006), however, the localized integration policies have some limitations. The immigrant integration programs in Japan might vary in coverage and quality depending on financial and demographic situa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Therefore, without uniformity at the national level, it might remain uneven and uncoordinated among the local governments. No national action plan to encourage social integration and no legal provisions at the national level might fail to ensure foreign residents and immigrants a legal guard against discrimination.

In contrast, the nationalized integration policies in Korea can maintain a uniformity of social services for immigrants across local administrations. Yet,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might fail to respond to the needs of local immigrant groups. In fact, the immigrant integration programs in Korea have been criticized by NGOs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devised the programs delivered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without considering local differences.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some lessons from the Japanese bottom-up approach, and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how to build an effective mechanism between th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and how to find the way in which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make a balance in making integration policies.

Bibliography

Abe, Atsuko. 2007. *Japanese Local Governments Facing the Reality of Immigration* 20 [cited 09/19 2007]. Available from <http://japanfocus.org/products/toppdf/2522>.

- Chapman, David. 2006. "Discourse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Tabunka Kyosei) and the 'old-comer' Korean Residents of Japan." *Asian Ethnicity* 7 (1):89-102.
- Choi, Jaehoon. 2008. Social Movements For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A Perspective On the State For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Department of Soci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 Chung, Erin Aeran. 2010. "Korea and Japan's Multicultural Models for Immigrant Incorporation." *Korea Observer* 41(4): 649-676.
- Eun, Ki-Soo. 2008. "Population Aging and Social Strategies for Aging Problems in Korea." *Korea Journal* 48 (4):5-34.
- Han, Seung-Mi. 2004. "From the Communitarian Ideal to the Public Sphere: The Making of Foreigners' Assemblies in Kawasaki City and Kanagawa Prefecture."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7 (1):41-60.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7. *World Migration Report 2018*.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Kim, Andrew Eungi. 2009. "Global Migration and South Korea: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and the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Ethnic and Racial Studies* 32 (1):70-92.
- Kim, Hye-Soon. 2008. "Gyeolhonijuyeoseonggwa hangukui damunhwa silum: Choegeun damunhwadamnonui sahoehak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Hanguk Sahoeahak (Korean Sociological Review)* 42 (2):36-71.
- Kim, Hyun Mee. 2007. "The State and Migrant Women: Diverging Hopes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 (4):100-22.
- _____. 2016. "Gyeolhonimin gwa iminja ese(Marriage migration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immigrants):. *Iminjeonchaekron(Theory of Immigration Policy)* Bakyounsa, Seoul.
- Kim, Joon K. 2003. "Insurgency and Advocacy: Unauthorized Foreign Workers and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2 (3):237-69.
- Kim, Nam-Kook. 2009. "Multicultural Challenges in Korea: the Current Stage and a Prospect." *International Migration* 52(2): 100-121.
- Komai, Hiroshi. 1995. *Migrant Workers in Japan*. Translated by J. Wilkinson. London and New York: Kegan Paul International.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12. *The Second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2013-2017)*. Gwacheon: Ministry of Justice.
- Kwak, Jun-Hyeok. 2009. "Coexistence without Principle: Reconsidering Multicultural

- Policies in Japan." *Pacific Focus* 24 (2):161-86.
- Lee, Hye-Kyung. 2008.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State in South Korea: Focusing on Governmental Policy." *Citizenship Studies* 12 (1):107-23.
- Lee, Yong Wook. 2009. "The Evolution of Korean Foreign Labor Policies in the Global Context: Toward the Politics of Societal (In)Security?" *Korea Observer* 40 (2):301-36.
- Morooka, Junya. 2006. *The Rhetoric of the Foreign Worker Problem in Contemporary Japan*. Communic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ittsburgh.
- Morris-Suzuki, Tessa. 2002.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n Contemporary Japan." In *Japan - Change and Continuity*, ed. J. Maswood, J. Graham and H. Miyajima. New York: RoutledgeCurzon.
- Pak, Katherine Tegtmeier. 2004. *Development of National Migration Regime: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enter for Comparative Immigration Studies 2004 [cited 07/18 2009]. Available from <http://www.ccis-ucsd.org/PUBLICATIONS/wrkg110.pdf>.
- _____. 2006. "Cities and Local Citizenship in Japan: Overcoming Nationality?" In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ed. T. Tsuda. Lanham: Lexington Books.
- Park, Young-bum. 2008b. "Republic of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17 (3-4):429-37.
- Pekkanen, Robert. 2006. *Japan's Dual Civil Society: Members Without Advocat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ol, Dong-Hoon. 2005. "Global Dimensions in Mapping the Foreign Labor Policies of Korea: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Development and Society* 34 (1):pp. 75-124.
- _____. 2008. "Migrants' Citizenship in Korea: With Focus on Migrant Workers and Marriage-Based Immigrant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Dignity and Justice for All Migrants*. Seou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_____, and John D. Skrentny. 2009.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 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 (2):147-74.
- Shin, Gi-Wook. 2006.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Tsuda, Takeyuki. 2006. *Local Citizenship in Recent Countries of Immigration: Japan in*

- Comparative Perspective*. Lanham: Lexington Books.
- Vogt, Gabriele. 2007. "Closed Doors, Open Doors, Doors Wide Shut?: Migration Politics in Japan." *Japan aktuell*: 3-30.
- Yamawaki, Keizo. 2008. "The Challenges for Japanese Immigrant Integration Policy." *Around the Globe* 4 (2):41-4.
- Yang, Kee-Ho. 2009. "Damunhwajeongchaekui Hanilbikyo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Public Policy for Multi-Cultural Society)." *Ilbonhakbo* 80.
- Yoo, Kil-Sang, June J. H Lee, and Kyu-Yong Lee. 2004. *A comparative study on labor migration management in selected countries*. Seoul: Korea Labor Institute.
- Yoon, In-Jin. 2008. "Hangukjeok Damunhwajueuieui Jeongaewa Teukseong: Gukkawa Siminsahoeueui Kwangyereul Jungsimeuiro (The Developement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anguk Sahoehak (Korea Sociological Review)* 42 (2):72-103.

(2019.06.25. 접수; 2019.06.28. 수정; 2019.06.29. 채택)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 정책 및 두 가지 거버넌스 패턴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주노동자의 유입, 재중동포의 귀환, 그리고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다문화적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자 통합정책에 있어 한국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중앙정부는 그간 이민자 통합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소극적이었으며, 대신 일본의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민자 통합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다른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 패턴을 인종적 소수자들과의 역사적 경험과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국가-사회 관계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결론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민자 통합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화된 패턴은 이민자들에게 지방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중앙집권화된 패턴은 이민자들에게 통일성을 갖춘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역 이민자 공동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이민자, 이민자 통합, 사회통합정책, 한국, 일본

부 록

- 부록 1. 한국이민학회 정관
- 부록 2.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 부록 3.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 부록 4.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 부록 5.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 부록 6.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 부록 7.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 부록 8.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 정: 2007년 2월 2일
제1차 개정: 2009년 7월 1일
제2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3차 개정: 2013년 4월 1일
제4차 개정: 2018년 1월 15일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udies Association (약칭: KIMSA)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경을 넘는 인간의 이동에 따른 제반현상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학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학술교류를 촉진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이민에 관한 연구
2. 국내 및 국제 학술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 구분 및 자격)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개인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이민과 관련된 분야를 강의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과정 중의 대학원생, 이민분야에 관심이 있는 법조인,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이민분야에 관심을 가진 석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이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정회원으로 본다.
- ③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④ 도서관회원은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와 연구결과물을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학회지를 무상으로 배부 받는다.
-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학회의 목적과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①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일을 하였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 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제3장 임원 】

제9조 (임원의 구분 및 임기)

- ①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4인 이내
 3. 총무이사 1인
 4. 편집이사 3인 이내
 5. 연구이사 3인 이내
 6. 감사 2인
 7. 기타 필요에 의해 이사로 선임되는 자.
-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 전임회장의 유고로 승계한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승계한 잔여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 (회장의 선출과 명예회장의 추대)

- ① 회장은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다.

제11조(기타 임원의 선출)

-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②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권한과 의무)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총회,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1개월 이내에 차기 회장이 회장의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반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예산 및 결산, 법인 등록 및 변경,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편집이사는 학회지 및 기타 연구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 ⑤ 연구이사는 정기학술대회의 기획 및 개최, 기타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⑥ 감사는 학회의 예산·결산과 사업을 감독한다.

【 제4장 조직 】

제13조 (총회)

- ① 본 학회의 최고결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일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 정회원 20인 이상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 3. 사업계획의 승인
 - 4. 결산의 승인
 - 5. 본 학회의 해산
 -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제9조 제1항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 2.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 3.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정회원의 가입자격 인정
 - 4. 제8조에 의한 회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 5. 회원에 대한 포상
 - 6. 기타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의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④ 이사회와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한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실무이사회)

- ①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이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회장이 선임하는 실무이사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 ③ 실무이사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이사회는 학회 운영을 위한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실무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기획한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
 2. 이사회 및 총회에 제출하기 위한 정관의 개정안
 3. 회원의 회비
 4. 본 학회의 명의로 수행하는 연구수탁사업 등의 전체 사업금액 중 학회귀속분의 비율
 5.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실무이사회에서의 의결은 출석한 실무이사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편집위원회)

- ①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학회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연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 ① 본 학회의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공 또는 연구주제별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회의 운영은 연구이사가 담당한다.
- ③ 연구이사 및 연구회의 연구기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연구회와 연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

제18조 (재산)

-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보조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에 따른 수입금
 5.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6. 본 학회의 기금
 7. 기타 수입
- ② 제5조의 회원 구분에 따른 회비의 금액은 실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9조 (재산의 관리)

- ① 본 학회 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회장이 관장한다.
- ②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재산의 처분,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
 2. 제4조 이외의 사업과 관련하여 본 학회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또는 본 학회의 권리 포기하는 행위(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채(起債) 또는 금전차입(상임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재정보고)

회장은 결산 등 본 학회의 재정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해산 】

제22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 (재산귀속)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한국이민학회 회장 선출에 관한 규정

제 정: 2017년 12월 8일

제1항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 회장의 선출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 (회장의 자격)

회장으로서의 피선거권은 선거 개시일 현재 정회원인 자에 한한다.

제3항 (회장의 선출)

(차기) 회장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 이사회에서 무기명으로 1인당 2인의 회장 후보를 추천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에 의한 추천을 포함하여 재적인원의 1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최다 추천 순으로 4명 이내의 예비후보를 확정한다. 단, 이메일이나 우편에 의한 추천은 이사회 전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메일이나 우편추천은 이사회에서 다른 추천과 함께 개봉한다. 또한 동수 득표의 경우에는 연장자 우선 원칙에 의해 예비후보를 확정하며, 예비후보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 없이 이를 후보로 확정하여 전임회장단에 추천한다.
2. 전임회장단회의에서 4인(이내)의 후보 중 1인을 (차기)회장으로 총회에 추천한다.
3.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임회장단에서 추천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4. 예비후보 선출시 득표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전임회장단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후보자의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단장이 전임회장단회의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5. 예비후보 또는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4항 (선거관리위원단의 구성 및 운영)

학회 총회일전에 회장이 단장을 맡고, 총무이사, 감사 1인이 위원인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하며, 추천서 발송, 개표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가 감시위원으로 활동한다.

제5항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 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이민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정: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이민학》(이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 논문을 투고, 발표하는 모든 사람과 그 저작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논문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리 학회를 통해 투고, 발표되는 모든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윤리규정

제4조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고 발표하는 모든 저자는 학회 정관에 천명된 목적의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을 따라 독창적인 논문을 작성·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 상규에 반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여기서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변조”는 연구 재료를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함).

- ② 전호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6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이나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오직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만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⑥ 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해 특정한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내용을 본 후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 심사를 위촉 받은 모든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① 모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심사 의견을 편집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곧바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높은 수준의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의 내용과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자신의 학술적 신

념이나 가정,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 위원회에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존의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논문의 내용이 다른 논문과 같거나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 (논문 저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논문 저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② 논문이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을 경우 인터넷에서 논문 삭제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9조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전조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재발 방지를 위한 경고
- ②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부터 해촉 및 재위촉 영구 금지
- ③ 학회 홈페이지 및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위반 사실 공시
- ④ 윤리규정을 위반한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의 소속기관에 위반 사실 통보

제10조 (이의 신청) 당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학회는 이를 판단할 연구윤리위원회

를 구성,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 중에서 5명으로 구성한다.

제12조 기타 본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상규에 따라 판단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10년 6월 14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한국이민학회(이하 학회라 칭함)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임기 및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회장단의 협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시에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2. 《한국이민학》의 편집 및 출간
3.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운영)

- ① 본 위원회는 《한국이민학》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의 평가자를 선임·위촉하고 평가자의 논평을 근거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

한다.

- ②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⑤ 편집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본 위원회가 편성하여 한국이민학회 회장에게 청구한다.
- ⑥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간사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조 이 내규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내규는 총회의 승인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이민학》 발간지침

제 정: 2008년 8월 1일
제1차 개정: 2010년 6월 14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이민학회의 공식 학술지 《한국이민학》(*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이민학》의 발간주기)

- ① 《한국이민학》은 연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한국이민학》의 발간번호는 제○권 제○호로 한다. 《한국이민학》의 발간연도에 따라 “제○권”의 숫자가 순서대로 부여되며, 같은 연도에 발행한 《한국이민학》의 순서에 따라 “제○호”가 부여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

- ① 한국이민학회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가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연구논문 등의 투고접수, 심사, 편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및 20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거 편집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부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논문투고)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할 논문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의 이민 관련 이론적·경험적 연구여야 하며,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회원으로 제한한다.
- ② 논문의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제출된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

- 나, 현재 게재를 심의 중이어서는 안 된다. 단, 외국어로 작성되어 저명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로 번역하여 실을 수 있다.
- ③ 논문 제출 시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https://dbpiaone.com/kimsa/index.do>)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④ 제출된 논문은 오·탈자의 수정을 제외한 내용상의 편집과 수정을 하지 않고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논문투고자가 진다.
 - ⑤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기재한다. 두 사람 이상의 복수 저자일 경우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기한다.
 - ⑦ 기타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 ①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 및 해당 전공의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논문의 원고를 해당분야의 편집위원에게 할당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할당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실적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 중 3인을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의 심사)

- ① 논문의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게재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게재불가” 중 하나의 심사결과와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의뢰 받은 기간(통상 2주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분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게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하고, 근본수정이라 함은 수정 후 재심사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의미한다.
- ②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분야 편집위원과 협의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③ 논문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자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체계와 완성도
2. 연구내용의 독창성과 창의성
3. 연구내용의 학술적·정책적 기여도
4. 연구방법의 적합성
5. 기타 편집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8조 (논문게재의 판정)

① 논문게재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 가, 가, 근본 가, 가, 부	가, 부분, 부분 가, 부분, 근본 부분, 부분, 부분 부분, 부분, 근본	가, 부분, 부 가, 근본, 근본 가, 근본, 부 부분, 부분, 부 부분, 근본, 근본 부분, 근본, 부 근본, 근본, 근본 근본, 근본, 부	가, 부, 부 부분, 부, 부 근본, 부, 부 부, 부, 부

※ 가: 게재가, 부분: 부분수정, 근본: 근본수정, 부: 게재불가

② 해당분야 편집위원은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논문 게재 여부를 판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수정후게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정후게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의 판단을 기초로 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심 판정 투고논문의 게재)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재심”의 판정을 통보받은 논문투고자는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과 수정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논문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동 규정은 여러분의 지적에 따라 삭제)

- ②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은 초심에서 부분수정, 근본수정 또는 부의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들에게 맡긴다.
- ③ 재심을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기간(통상 1주일) 이내에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의 재심 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정·보완된 논문의 재심 결과, 초심에서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의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평가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확정한다.

제11조 (게재불가 판정 논문의 심사 재신청)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재신청”임을 명기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으며, 이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은 당초의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의신청 및 재심사)

- ① 논문투고자는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세한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 사유를 검토한 후 재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재심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이의 제기자에게 통보한다.
- ④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5조 이하에 의거, 새로운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치게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원래 심사위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제13조 (표절 지적의 처리)

- ① 편집위원회는 표절이란 의견이 제시되고 표절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심사를 중단한다.
- ② 이때 편집위원회는 표절 지적 내용과 관련 자료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③ 논문투고자는 다툼이 해결되었음을 증빙하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판권 등)

- ①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이민학회에 귀속한다.
- ② 논문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 또는 발간물 등에 게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이민학》에 게재된 논문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 (논문게재예정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한국이민학》이 발간된 후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7조 (보칙) 《한국이민학》의 발간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

원고 제출 및 게재

1. 《한국이민학》은 한국 및 세계 이민문제와 관련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싣고 있다.
2. 《한국이민학》에 게재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국제 저명 학술지에 외국어로 발표된 논문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할 수 있다.
3. 《한국이민학》은 수시로 논문을 접수한다. 《한국이민학》에 투고를 원하는 사람은 원고를 워드프로세서(흔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논문투고시스템(<https://dbpiaone.com/kimsa/index.do>)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4. 제출원고는 한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다음 원고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5. 접수된 논문은 심사위원 3인 이상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6. 게재 결정 이후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후, 최종원고를 담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다.

원고 작성지침

1. 원고 논문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단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각주, 참고문헌, 도표 등을 포함하여 25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단편(research notes)은 10매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원고는 국문으로 제목표지(논문제목·저자이름·요약문·핵심단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그림, 부록, 저자소개의 순으로 작성한다. 아울러, 영문으로 논문제목, 저자이름, 요약문(English Abstract), 핵심단어(Key Words)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5.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한자를 괄호 속에 함께 쓰도록 하고, 기타의 외래어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뒤에 괄호 속에 함께 쓴다.
6. 원고의 제목표지에는 논문의 제목, 저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인 공동연구의 경우 중간점(·)을 사용하여 옆으로 나란히 기재

한다. 감사의 글, 연구비 지원기관, 교신저자 등은 *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7. 논문의 국문 핵심단어와 영문 핵심단어는 3-5개 제시한다.
8. 국문과 영문 요약문(연구단편 포함)은 200자 원고지 5장 또는 A4 용지 단면 1/2장 이내로 작성한다.
9. 본문에서는 논문의 제목을 본문의 첫 장에 기재한다.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이 저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서술은 삼가야 한다. 세부적인 본문 서술 요령은 다음과 같다.
 - 1) 본문은 내용의 구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3단계 정도의 소제목을 추천한다. 소제목은 I., 1., 1), (1), ① 형식으로 단계적으로 구성한다.
 - 2) 저술 인용방식은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 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인용 페이지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저술을 되풀이 인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 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 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 1, “…… 설동훈(1999: 10)”; 예 2, “…… (설동훈, 1999: 10)”
 -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한글로 쓰고 원명은 괄호 속에 담는다.
 예, “……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85)”
 - (3) 2인 공동저술일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 (유길상·이규용, 2001)”
 -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외”를 사용한다.
 예,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과 그 이후 “…… (이규용 외, 2007)”
 - (5) 출판 예정인 저술을 인용할 때는 “출판예정”(또는 “forthcoming”)을 부기하고, 미간행물일 경우에는 “미간행”(또는 “unpublished”)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예, “…… (Gereffi, Spener and Bair, 2002 forthcoming)” 또는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미간행)”
10.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한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 문헌을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

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 표기를 한다. 다음은 참고문헌 작성 원칙에 따른 예다.

1) 도서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유길상·이규용. 200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유길상·이해춘·설동훈·박성재. 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 방향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Lin, Nan. 2002.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nelius, Wayne A., Takeyuki Tsuda, Philip L. Martin, and James F. Hollifield (eds.). 2004. *Controlling Immigration: A Global Perspective*, 2nd Ed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reffi, Gary, David Spener, and Jennifer Bair (eds.). 2002 (forthcoming). *Free Trade and Uneven Development: The North American Apparel Industry After NAFTA*.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2) 학술지 게재 논문

- 박경태. 2001. “사회적 자본으로서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필리핀과 홍콩의 NGO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2(겨울): 184-205.
- 설동훈·김윤택. 2004. “대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체계.” 《중소연구》 28(3): 69-117.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Granovetter, Mark.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481-510.
- Brown, Jacqueline Johnson, and Peter H. Reingen. 1987. “Social Ties and Word-of-Mouth Referral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 350-362.

3) 단행본 수록 논문

- 이철우. 2004. “피로써 구별되는 국민들: 혼혈인과 한국사회.” 정인섭 편,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pp. 233-261.
- 町村敬志(마치무라 타카시). 1992. “グローバルゼーションと世界都市形成.” 梶田孝道 編, 『國際社會學: 國家を超える現象をどうとらえるか』.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pp. 114-133.
- 森田桐郎(Morita, Kirirora). 1987. “資本主義の世界的展開と國際勞働力移動.” 森田桐郎 編, 『國際勞働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pp. 1-54.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Pp. 241-258 i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edited by John G. Richards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4) 번역도서

- 伊東順子(Ito, Junko). 2001. 『病としての韓國ナショナリズム』. 東京: 洋泉社. (김혜숙 역. 2002. 『한국인은 좋아도 한국민족은 싫다』. 개마고원).
- Castells, Manuel.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최병두 역. 2001. 『정보도시: 정보기술의 정치경제학』. 한울).
- Weber, Max. 1946.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5) 번역논문

- Weber, Max. 1893. “Die landliche Arbeitsverfassung.” *Schriften des Sozialpolitik* 58: 62-86. (임영일·차명수·이상률 역. 1991. “농업노동제도.” 『막스 베버 선집』. 까치. pp. 289-314).
- Weber, Max. 1946[1919]. “Politics as a Vocation.” Pp. 77-128 i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translated and edited by Hans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6) 미간행 학위논문

- 최홍엽. 1997.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미간행).
- Lee, Young Hwan. 1991.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n Labor Market Outcomes: A Case Study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tanford University.

7) 학술회의 발표논문과 미간행 자료

- 설동훈.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권리와 생활실태.” 『한국아동권리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아동 소외의 현장 —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한국아동권리학회. pp. 54-81.
(숙명여자대학교 제2창학관 켄마홀, 2006·5·19)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미간행).

Schrecker, Ted. 1996. “The Borderless World and the Walled City: Metaphors for North American Social and Economic Life in the Twenty-First Century.” Paper Presented at a workshop 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Vancouver, BC, Canada, March 1996. (Unpublished).

8) 인터넷 자료

- 서울특별시. 2001. 『서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여론조사』. (<http://www.metro.seoul.kr/kor2000/research/total/down/11/11-12.pdf>에서 가용. 인터넷; 2002년 7월 31일 접속).
- U.S. Department of State. 2001.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01*. (Available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4107.pdf>. Internet; accessed February 7, 2002).

ABCNEWS. 1998. “Women Forced to Work: Forced Abortions Are Conducted on U.S. Territory.” ABC News World Headlines, April 1, 1998. (Available from <http://www.abcnews.com/sections/world/DailyNews/saipan0331.html>. Internet; accessed March 25, 1998).

9) 동일 저자의 같은 해 저술

- 설동훈. 2002a.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 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52 (봄): 200-223.
- _____. 2002b.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인가, 외국인 용병인가?” 《당대비평》 6(1): 53-68.
- Petras, Elizabeth McLean. 1980a. “The Role of National Boundaries in a Cross-National Labou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4(2): 157-195.
- _____. 1980b. “Towards a Theory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 New Division of Labor.” Pp. 439-449 in *Sourcebook on the New Immigr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dited by Roy Simon Bryce-Laporte. New Burnswick, NJ: Transaction Books.

11. 표와 그림은 별지에 작성하고, 제목은 표와 그림의 위에 적는다. 주는 “주:”라고 시작하고, 출처는 “자료:”로 시작하여 표와 그림의 아래에 적는다.
12. 이 요강에 미비된 기타 사항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이민학》 제6권 제2호의 관례에 따른다.
13. 원고 작성에 대한 문의처
 ☎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송영훈 교수 연구실 (사회과학대학 203호) 내 《한국이민학》 편집위원회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전화: (033) 250-6841; (063) 270-3586

한국이민학회 2019-2020년 임원 명단

회 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부 회 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이승미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총 무 이 사	이병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편 집 이 사	송영훈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천웅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철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 구 이 사	신지원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이정은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김현식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국 제 이 사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박 우 (한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학 술 이 사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한준성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송영호 (IOM이민정책연구원)	
기 획 이 사	이충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사 업 이 사	고재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비상임이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이혜경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경구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철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이진영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최홍엽 (조선대학교 법학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한국노동연구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김혜순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수베디 (한남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육주원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조세현 (한국행정연구원)
	조영희 (IOM이민정책연구원)	
감 사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승미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이민학》 제7권 제1호 (2019)

인 쇄 일: 2019년 6월 29일

발 행 일: 2019년 6월 30일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이민학회

발 행 인: 설 동 훈

사 무 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630호 ☎ 54896

전 화: (063)270-3586

전자우편: kimsa4info@gmail.com

홈페이지: www.kimanet.org

인 쇄 처: 온누리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2 ☎ 54899

전 화: (063) 254-5311

전자우편: un5311@hanmail.net

ISSN 2093-6044